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료비
	B4	18

시민, 사회단체 공개토론회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6. 4. 23 14:00

기독교회관 강당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개인유대통신(PCS)*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사료번호

시민, 사회단체 공개토론회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6. 4. 23 14:00
기독교회관 강당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법국민대책위원회**

토론회 순서

사회: 김금수 (한겨레 논설위원, 공동대책위 대표)

- | | |
|--|--|
| 14:00 | 토론회 시작
인사말 |
| 14:10 - 14:40 | 주제발표 1: 김상곤 교수 (한신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 14:40 - 15:10 | 주제발표 2: 김영철 위원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
| 15:10 - 15:20 발제에 대한 간단한 질의/ 응답 | |
| 15:20 - 15:30 휴식 | |
| 15:30 - 16:00 사례발표 : 일본 NTT 사례
(가지로는
일본 고리瞪頭公司) | |
| 16:00 - 16:50 | 토론
김형만 (한국통신노조 기획국장)
곽노연 (방송통신대 교수)
유선호 (민변 경제정의위원장)
이승원 (데이콤 노조위원장)
윤우연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
| 16:50 - 17:00 휴식 | |
| 17:00 - 18:00 논평 / 질의 응답 / 종합토론(주제별) | |
| 18:00 폐회 및 뒷풀이 | |

통신시장 개방과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검토¹⁾

김상곤 (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I. 머리말

참으로 보기드문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PCS(개인휴대통신) 사업권을 둘러싸고 숙명의 라이벌 현대와 삼성 두 거대 공통이 연합한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인가, 아니면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자본의 추악함인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재벌들의 진흙탕 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PCS 사업권 '쟁취'를 위한 현대·삼성 연합인 에버넷과 LG의 싸움은 선거보다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통신대란', '통신사업 대희전', '신규통신사업 전쟁' 등으로 일컬어 지면서, 실제 전쟁을 방불케 했던 재벌들간의 1차 '통신전쟁'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95년 7월 정부의 개인휴대통신(PCS) 등 7개 분야 통신사업자 선정 계획 발표로 시작된 신규통신사업자 사업권 쟁탈전은 4월 17일 신청마감으로 일단은 막을 내렸다. 언론까지 편가르기에 나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재계의 판도를 일시에 바꿔버릴 정도로 이권이 큰 사업이다.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은 이전투구식으로 이권을 쫓으며 재벌반열에 오르기 위해 통신사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 경영의 도덕성까지 갖춘'²⁾ 재벌들을 선정한다는데 과연 어떤 재벌들에게 승리가 돌아갈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이나, 한국의 통신산업 발전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철저히 소외된 채 재벌위주의 통신사업 분할이 진행되었다.

1) 이 글은 95년 7월 6일 통신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통신시장 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최근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글이다. 작성과정에서 박하준·조두극(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상담소 연구원)씨의 도움을 받았다.

2)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항목으로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내 통신 시장이 점점 진입이 있는 것 같다.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의 위치는 어떨까?

수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이윤만을 쫓아 시장을 찾아 헤매는 재벌들의 통신시장 장악은 국민경제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³⁾. 더욱이 정부의 재벌위주 통신정책은 '한국의 통신'을 만들어 왔던 한국통신 노동자들을 최대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을 장악하면 21세기를 장악한다며 110년, 이 나라 정보통신산업기반 구축의 주인공들은 '비효율'로 몰아세우며 쫓아내고,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통신산업기반 구축에 땀 한방울 흘리지 않은 재벌들에게 통신사업을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외국 거대기업에 맞서서 우리의 통신산업을 지켜내야 할 가장 경쟁력을 갖춘 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의견을 모우는 것과 함께 투명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제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마땅히 국민에 의해 세워진 정부라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생활과 그 산업 종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 통신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정책은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다.

이제 재벌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소수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바꿔나갈 것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이 글에서는 미국의 통신개방압력과 정부의 재벌위주 통신정책, 재벌의 통신사업 장악이 어떠한 연관속에서 진행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한국통신 무력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통신 무력화가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신규통신사업 신청기업을 마감한 결과,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파수 공용통신(TRS)을 보면, 강원이나 충북지역에는 신청 기업이 하나도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서비스를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II. 통신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현황

2001년께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시장규모는 약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GNP 대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히 한국의 무궁한 통신시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정보통신산업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저공해·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시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의식까지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혁신과 사용이란 높은 일드*

이렇게 21세기 국가산업을 선도하고 국부의 원천이 될 정보통신산업,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될 정보통신산업 시장쟁탈전이 한창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마지막 기본통신협상(NGBT)이 4월 13일 제네바에서 개막되어 협상시한인 4월 말 타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안으로는 개방을 전제로 한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PCS(개인휴대통신) 등 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재벌들의 본격적인 세몰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의 통신시장 장악을 위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과 신규통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재벌 등 양측의 협공으로 이제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

'통신시장쟁탈전'은 80년대 후반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요구로 시작되었으나. 그 양상은 미국과 재벌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언론과 관변학자 그리고 관료들을 총동원, 한국의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꾃끗히 일해 온 대다수 통신종사자들을 소외시키고, 국민을 철저히 현혹시키는 각종 이데올로기 등을 유포해가면서 진행되었다. 이제 일국의 중추신경망이자, 국가경제의 흥망을 담보하고 국민의 의식, 인성까지 좌우할 정보통신산업이 미국과 소수재벌에게 넘어가게 될 운명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신시장개방과 이를 이용하여 뒤통거리는 공룡의 몸으로 통신시장까지 집어삼키고자 하는 재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재벌을 위한 통신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정부에 다시 한 번 반성과 자제를 촉구하면서 통신시장개방의 부당성과 통신정책의 편파성을 짚어나가고자 한다.

1. 미국의 통신시장개방 압력과 통신산업정책 개요

미국은 80년대 들어 쌍동이 적자로 표현되는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을 펼치게 된다. 작은 정부, 민영화, 시장경제, 경쟁, 효율 등이 최고의 가치로 주창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은정부가 실현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효율의 달성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이 정책은 학비보조, 의료비보조 등 사회복지성 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 국민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온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축적을 돋자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국내에서 이렇게 자국민의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 미국정부는 자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각국에 경제개방압력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은 정보통신분야의 우위를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 회복을 노리며,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통신분야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시켰다.

그러나 시장개방요구가 쉽게 관철되지 않자, 88종합무역법(88년 8월 23일에 의회 통과)에 통신부문을 첨가시켜 수퍼 301조 [주요내용-USTR의 권한 강화, 보복조치의 의무화, 불공정 거래범위의 확대, 협상기간의 명시(5개월, 결렬시 PFC 지정)]라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며 반강제적으로 시장개방의 명분을 확보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USTR(미무역 대표부)은 통신관련 무역조사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한국을 개방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88년 12월 비공식 서한을 통해, 서비스, 조달, 관세, 표준 등 전기통신시장 전체를 개방하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종합무역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이에 정부는 두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89년 2월23일 EC와 더불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미국과 굴욕적인 통신협상을 시작하였으며, 10차례의 통신협상 후 92년 2월 합의각서를 교환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도 통신분야 서비스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UR이 극적으로 타결된 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WTO 기본통신 협상그룹(NGBT)에 가입한 우리나라에는 현재 96년 4월말 타결을 전제로 NGBT 기본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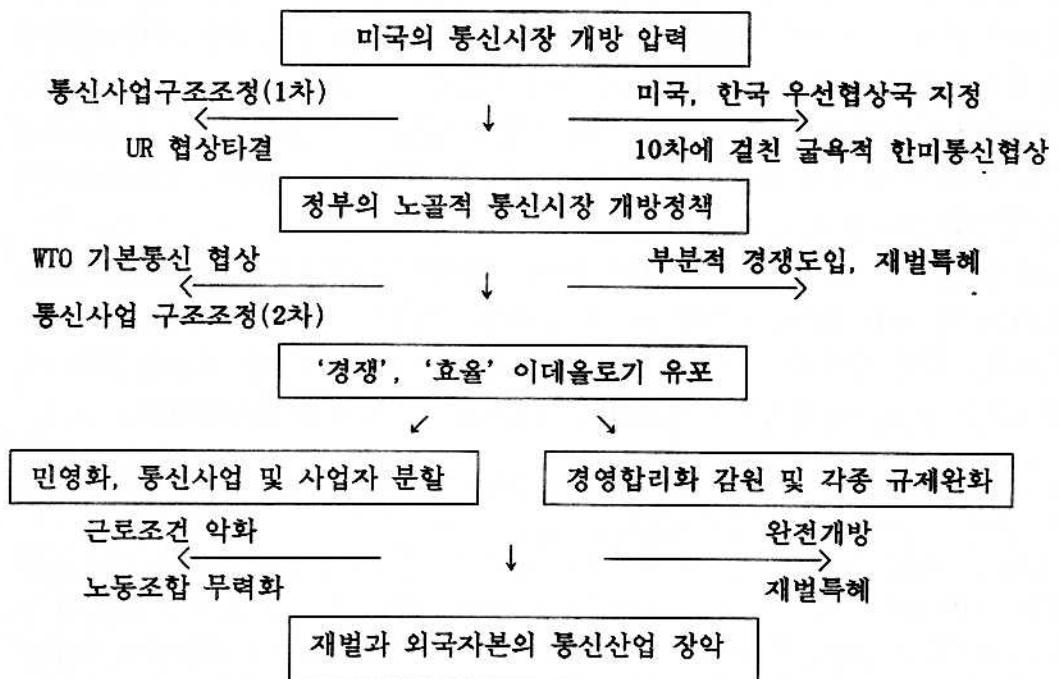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압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후 시장개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기정사실화 하며, 90년, 94년, 95년 3차례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 틈을 비집고 재벌들은 자기들끼리의 이전투구도 마다하지

않고, '경쟁'과 '효율'을 부르짖으며 통신시장 장악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통신사업자가 어떠한 경쟁력도 갖추어지기 전에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통신시장을 전면개방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독점재벌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 힘 안들이고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독점재벌끼리의 견제와 흡집내기 등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면서까지 민영화, 통신사업자 분할,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들은 통신시장 개방이 민영화와 맞물려 진행되자 외국기업의 한국의 통신시장 장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분할로 얻어지는 재벌특혜를 꿈꾸며 오히려 정부의 굽뜬 행동을 못마땅해 여기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미국과 독점재벌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경쟁력 강화', '효율' 이데올로기 유포를 통해 시장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그림 I-1> 통신산업 개방과 재편 흐름도



즉 미국의 통신시장개방 압력 -> 정부의 노골적 통신개방 정책 -> '경쟁', '효율' 이데올로기 유포

'효율' 이데올로기 유포 -> 민영화, 통신사업 및 사업자 분할 -> 미국 및 재벌의 통신시장 장악이라는 예정된 수순을 차실히 밟고 있는 것이다.

2. 통신시장 개방과 재벌위주의 통신정책

1) 한미통신협상, UR협상-NGBT(기본통신 협상그룹)협상과정과 문제점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89년 2월23일 EC와 더불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이루어진 한미통신협상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UR협상-WTO출범-NGBT(기본통신 협상그룹)에 의한 개방압력이다.

먼저 한미통신협상을 보자. 미국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⁴⁾으로 지정된 후 시작된 협상은 1년씩 두차례를 연기하면서(90년 2월23일, 91년 2월23일) 종합부역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다채우고 난 92년 2월 21일까지 계속되었다.

총 10차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주요 내용은 VAN(부가통신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폐지, DTS(데이터 단순전송) 투자정책 검토·국제 DB/DP 등록제 폐지 검토, 전용회선 이용제한 완화, 공정경쟁 보장제도 시행, 특정통신사업 참여(별도합의), 조달시장 개방 등이었다.

우선협상국 해제 이후 미국은 92년 6월에 있었던 협상에서 이동통신, 위성통신에 대한 개방을 촉구하고, 드디어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기본통신서비스 개방을 요구했다.

93년 10월과 94년 2월 통신협상에서는 특정통신서비스(규제서비스의 일부)의 전국적 제공 보장, PCS사업의 조기 추진, 자가통신용 TRS 이용규제 완화, 부가통신사업 운영제도 개선(규제의 간소화), 공정보장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지속적인 논의, AT&T의 국설교환기 5ESS2000의 구매를 요구하였다.

4) EC도 한국과 함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한 번도 쌍무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한국의 무궁한 시장 잠재력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에 있어선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을 시장개방의 하나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이 미국의 개방압력에 쉽게 굴복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동남아를 비롯 중국, 북한 등 아시아 통신시장 장악에도 그만큼 우위를 점할수 있기 때문이다.

95년 3월 17일 미국은 한국통신의 각종 기기조달에 관한 제도운용이 미국제품에 배타적이라고 판단, 한국을 전기통신분야 시장개방 자연에 따라 경제제재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국내 규정도 무시한 고집으로 결국 한국통신 교환기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96년 4월2일 폐막된 한미통신협정에서는 국산품 우선구매 폐지를 강력히 요구, 새로운 통신사업자 선정시 예상되는 8조원이 넘는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UR협상-NGBT(기본통신 협상그룹)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을 보자.

1986년 9월 우루과이 GATT 각료회의에서 UR협상이 출범되었으며, 당시 4년 기한으로 협상을 종결할 것을 의결하였다. 통신분야 서비스 협상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 세계 각국이 별다른 이견 없이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의견대립으로 상당기간 교착상태를 보였다.

한국은 양허안(Offer List)에서 정보검색, 정보처리, 데이터 단순 전송서비스를 개방대상서비스로 하고 94년 1월부터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UR협상 종료직전까지도 미국은 MFN(최혜국대우) 일탈을 위협하며 캐나다, 스웨덴, 멕시코, 한국, 홍콩, 일본 등 12개국의 기본통신시장 개방요구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후 스웨덴, 캐나다 등이 기본통신 협상 대안을 제시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 체제가 발족한 이후 95년 2월28일에서 3월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WTO 기본통신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 국가에만 시장을 개방한다는 상호주의 입장을 천명하고 WTO 기본통신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모든 참가국에 미국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다. 더욱이 시장개방 뿐 아니라 효과적인 시장진입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5년 7월 10일에서 7월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WTO 기본통신 협상에서 미국은 기본통신분야 사업자수제한 금지, 공정한 상호접속보장, 외국인 지분제한철폐, 한국통신의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회계분리·망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⁵⁾.

WTO 협정에 따라 기본통신협상그룹은 95년 4월말까지 통신시장개방 양허요구서, 7월 1일까지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96년 4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 'WTO 기본통신협상(NGBT) 진행', 95.7.26

그 일환으로 4월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기본통신협상(NGBT)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상에서 통신시장 개방의 주요 타겟은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신홍 5개국이다. 그 중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주요 대상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98년 유무선 전화서비스 사업의 외국인 지분참여 33% 허용, 위성통신서비스 완전개방, 국가기술 표준에 의한 외국업체 참여제한 해소 등을 양허 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인 지분제한 완전철폐, 한국통신의 시장독점정책 폐지 등 완전하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장개방의 문제점과 우리정부는 협상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보면 한마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의 내정이나 주권까지도 간섭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정부는 어떠한가? 협상에 임했던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어느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미국과의 한미통신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우선협상국(PFC)지정의 부당함은 외면하고 대외개방을 기정사실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문제의 본질을 개방의 시기와 범위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은 은폐시킨 채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데 열성적이었다. 정책당국의 한책임자는 공식석상상에서 통신서비스 부문의 개방논의를 UR에서 하게 되어 협상시한을 1년 연장시킨 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할 정도였다.

밀실협상과 협상자료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대중의 참여와 합의가 배제된 채, 협상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신노동자들도 배제하고 수많은 의혹과 잡음속에서 수립·집행된 통신시장개방에 정부는 항상 '협상은 성공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⁶⁾.

95년 3월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신협상에서도 미국의 무례한 행동과 청부당국의 굴욕적인 자세가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이 96년에 신설하는 12개 전화국에 사용될 교환기 구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은 AT&T사의 5ESS-2000 교환기에 대한 품질인증절차(기능

6) 통신문제연구회, 『통신시장개방과 정보사회』, 풀빛, 1991

시험-3개월과 현장실험-6개월)를 생략하고 곧바로 인증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한국통신에 요청했다. AT&T사는 94년 10월에 5ESS2000 인증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95년 하반기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내교환기 4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TDX-10개량형 교환기도 인증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에 의한 통신시장개방이 아니라 압력과 특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방적·고압적 자세를 드러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은 '조건부 입찰자격을 주는 대신 입찰후에라도 시험은 반드시 받도록 하여 제도를 지키면서 무역보복을 피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또 '사설 통신망 장비의 형식승인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도 미국에 수출하는 장비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도록 요구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다. 장관이 이런 정도이니, 우리 정부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통신협상에 늘 이같은 자세로 일관해 왔다.

또한 미국은 96년 3월 24일부터 4월2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통신회담 기간 중 자국업체의 한국내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국산장비우선 구매조항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장비구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침도 시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통신회담 폐막직후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향후 3개월간 한국이 그동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통신사업자 선정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통신 장비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주권국가의 정책에까지 당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수요가 엄청난 통신장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현재로서는 서비스분야보다 오히려 통신장비시장을 더 노리고 있다. 장비사업의 규모와 전후방관련 사업을 볼 때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이다⁸⁾.

7) 한겨레신문, 95년 3월 21일

8) PCS 등 7개 통신서비스사업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장비수요는 2000년 까지 5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3개 사업자가 선정되는 PCS의 경우 각사당 초기 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예상되고, 또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도 관련기술개발 완료시점에 통신장비 구매에 나서 PCS분야 장비만으로 향후 3~4년간 무려 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스공용통신(TRS) 분야에서는 3천억원, 무선테이터 사업 역시 향후 3~4년간 3천억원 규모의 통신장비시장 형성, 발신전용 휴대전화(CT-2)의 신규사업자 역시 3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동안 유선전화에 쏟아부었던 자금이 무선통신분야로 옮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토롤라, AT&T, 에릭슨사 등은 자국정부에 대해 한국에 개방압력을 요구하는 한편 신규사업권 획득을 추진중인 국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현재 상호 완전한 개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험축적면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이제 결음마 단계인 우리의 정보통신산업기반을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다. 통신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며 국가의 신경망 구실을 하는 미래산업이다. 기술체계의 특성상 하나의 시스템을 선정하면 교체하기가 쉽지 않고 바꾼다해도 엄청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칫 개방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통신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 통신주권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다. 통신선진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최대한 빨리 외국에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립, 통신개도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⁹⁾는 등 선부른 시방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싹이 트기도 전에 온갖 협박과 맹강을 부리면서 강제적인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경제종속, 정보, 기술의 대미의존을 통해 21세기 과학기술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식민지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이 갖추어지기 전의 부분별한 시장개방은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쌀시장 개방보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2) 재벌 위주의 통신정책과 문제점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강압적인 정보통신시장개방 요구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보통신산업 정책이다.

89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한미통신협상이나 UR 통신협상, 그리고 WTO체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 협상(NGBT) 과정에서 보여준 굴욕적인 개방수용 자세, 정부는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미국을 의식하여 오히려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으로 ‘시장개방 대세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시장개방이 세계적 추세이니 우리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경쟁력은 자금이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이 적격이다’라는 논리로 ‘시장개방의 필연성 확보와 재벌위주 통신정책의 정당성 획득’

한국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문화일보 4월 8일).

9) 스페인이나 포루투칼 등은 95년 말 제출한 WTO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안에서 개방시기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전자신문, 1995.12.14 사설).

등 깔끄러운 두가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통신사업 기본정책은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 이었다. 즉 98년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통신 서비스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자생력을 확보한 다음 국제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노골적인 재벌위주의 정책을 펴나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전제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선국내경쟁’이라는 이유로 재벌에게 통신시장을 조개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시급하게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해서 대외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복투자와 내부의 과당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재벌위주의 ‘나눠먹기식’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켜 외국 통신업체의 국내시장 장악만 용이하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노골적인 재벌위주의 정책,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보았듯이 80년대 말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일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1989년 2월 23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은 1년 이내에 미국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자국법인 수퍼 301조에 의해 무제한 무역조보복조치를 감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한미협상의 와중에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1990년 제1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장거리전화의 경쟁을 골자로 한 제1차 통신사업 구조조정은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이 90년 제1차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통신사업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즉 통신사업에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재벌의 통신사업 참여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통신산업은 서서히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 이전의 통신사업은 분야별 독점체제¹⁰⁾를 유지해 왔으나, 구조조정

10) 분야별 독점체제란 각 부문별 사업자는 독점부분에 대해서 독점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화서비스는 한국통신, 이동통신부문은 (주)한국이동통신이 주관하여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에는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독점을 유지시키고, 장거리·국제전화·이동통신분야에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며, 부가통신 사업부문은 조기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외자비율(50%) 철폐가 이루어져 1991년 국제 VAN 서비스(부가가치 서비스)가 전면 허용되었다. 또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자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표 I-1> 1990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자제도 비교

개정 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통신설비보유 -통신설비 임대	-자기업무용 통신설비보유 -지역적·기술적으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	
개정 전	공중통신 사업자		-정보통신업무 제공업자

그러나 이 구조조정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과 더불어 시장개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의미 또한 대단히 크다. 즉 미국이 한국의 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신부문이 미리 여러 사업자에게 분리되어 있거나 경쟁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고도통신부문 등 첨단서비스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에 진출한 미국 자본의 이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이기 때문이다¹¹⁾.

이후 93년 12월 타결된 UR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은 정부의 통신정책을 재벌위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통신사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원리', '효율', '경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노골적인 재벌위주 통신정책을 폐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내통신시장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시장개방을 당연시하며 통신정책을 펴나갔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제2차 통신사업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제2차 통신사업구조정의 핵심은 시외전화 부문 등 '경쟁'의 가속화, 재벌과 미국의 통신사업 진입을 가로막았던 각종 제도 철폐, 통신사업의

11) 통신문제연구회, 『통신시장개방과 정보사회』, 풀빛, 1991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효율'과 '시장'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경쟁력강화와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이다. 정부는 한국통신 민영화 기반조성을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자회사 설립, 사업부 분할과 2만여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감원정책을 추진할 의도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표 I-2> 국내 통신사업자의 진입조건 및 지분소유한도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95.1)
사업자 분류	-기간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통합) -부가통신사업자
사업자 조건	-기간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 지정 ·특정통신사업자 : 허가 -부가통신사업자 : 등록	-기간통신사업자 : 허가 부가통신사업자 : 신고
지분 소유 한도	-일반통신사업자 ·동일인 : 10% ·통신설비업체 : 3% ·정부투자기관 : 10% ·외국인 : 금지 -특정통신사업자 ·동일인 : 1/3 ·통신설비업체 : 10% ·정부투자기관 : 10% ·외국인 : 1/3	-기간통신사업자(시내외·국제 전화) ·동일인 : 10% ·정부투자기관 : 10% ·외국인 : 금지 -기간통신사업자(기타) ·동일인 : 1/3 ·정부투자기관 : 10% ·외국인 : 1/3 *통신설비 업체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어지고 동일인의 소유한도를 적용받음.
사업영역	.일반통신사업자 전화, 전보, 가입전신, 각종 음성·비음성서비스, 전화망 확장서비스 .특정통신사업자 이동통신, 항만통신, 항공통신부문 .부가통신사업자 DB/DP 데이터의 축적, 전송 및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전기통신역무 기간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역무 .비규제 전기통신역무 기간통신 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또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

1995년 1월 전기통신기본·사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제 2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은 재벌의 통신사업 참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즉 국내 통신시장을 분할하여 재벌들의 '나누어 먹기'가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공고화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90년 제1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이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한 기반조성이었다면, 94년 제2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법·제도적 장애요소를 완화함과 동시에 기

술개발, 경쟁,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재벌에게 통신시장을 조개 주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사업자 분류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무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던 사업영역을 허물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분소유 한도를 보면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등 유선전화의 경우 3%에서 10%까지,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기타통신사업의 경우 10%에서 1/3까지 참여 등 통신설비업체들(현대, 삼성, 대우, LG)의 지분소유한도를 크게 높여 유무선 통신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기본법을 개정하므로써, 향후 재벌의 통신참여로 서비스와 기기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독점적 폐해가 우려된다. 즉 제조업체의 지분확대는 수직결합의 확대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협평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수직결합으로 인한 구매강요, 독점 사용으로 제조업체간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통신사업이 재벌의 이권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과 재벌의 통신사업 진입을 가로막았던 각종 제도 철폐가 이루어져 한국의 통신시장은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장에서 이제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장이 되어 버렸다.

3) 재벌의 통신산업 진출 및 장악 과정

그야말로 통신사업은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한국통신을 보면 94년 당기순이익이 6,270억원으로 93년 4,708억원보다 33.2%나 증가했으며, 이동전화·빼빼 등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이동통신업체들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국이동통신은 94년 7천 2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해에 비해 6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고 당기순이익도 93년의 720억원에서 94년 1천억원을 넘어 국내 5위를 기록했다. 이동전화 사업의 가입자수가 2배로 증가하여 95년 매출액 1조3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 이동통신업체인 나래이동통신도 94년 매출액 5백억원, 순이익 40-50억원을 비롯 수도권지역의 무선호출사업자들은 매출액 5백억원 이상 40-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며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통신사업에 체면도 안가리고, '돈벌이'라면 외국의 식료품까지 수입하여 팔아먹는 독점재벌이 군침을 흘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통신시장에 재벌들의 진출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다.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지만, 시외(연간 2조원)·국제전화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실질적으로 LG그룹이 최대주주이며 그 외 동양그룹, 삼성, 대우, 현대도 주식

을 갖고 있음)간에 복점, 이동통신은 한국이동통신(선경 23% 지분으로 최대주주)과 신세기통신(포철 15%, 코오롱 14%,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등 4대 통신설비업체들이 각 3%, 한전 4.5%)간에 복점, 부가통신사업은 완전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그리고 통신설비 제조업체 등으로 진출한 재벌들에 의해 통신시장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 재벌들의 통신시장 장악을 위한 투쟁은 처절했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기만 했던 '대기업의 체면'을 훌훌 벗어던지고 더 많은 지분을 얻기 위한 재벌들의 진흙탕 싸움과 정부의 무능력으로 통신시장은 재벌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부의 직무를 포기하며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맡겨버린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94년)은 정부와 재벌의 추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이다. 6공 말기 국민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경에 사업권을 줬다가 국민의 반발로 사업자 선정권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는 현정부에 떠넘겨졌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직무를 포기하고 전경련에 사업자 선정권을 넘겨줘 결국 포철(15%), 코오롱(14%), 그리고 삼성, 현대, 대우, LG 등 4개 재벌이 각각 3%씩 나누어 가졌다.

결국 제1차 통신사업 구조조정 기본방안(90년)에 따라 노태우 정권 말기(92년 4월) 정경유착과 특혜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을 볼도저처럼 밀어부쳤던 정부가 스스로 직무를 포기하고 전경련에 위임해 버린 것이다. '자율조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전경련은 재벌의 진흙탕 싸움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협력경영'이라는 차원에 결국 '나누어 먹기'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나누어먹기'식의 새로운 재벌질서만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기업 민영화를 앞두고 재벌간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신재벌경제시대'의 서막을 여는 역할만을 하고 말았다¹²⁾.

또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주식인수(94년)는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선경에 특혜를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당초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이를 포기하고 그 댓가로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한 선경은 이동통신주식을 인수하면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조항과 여신관리 규정 적용을 2년 또는 5년간 유예받았다. 이같은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선경그룹의 이동통

12) 장하성,『나라정책연구회 자료집』, 「제2이동통신 민영화의 서막인가」, 1994.4

신 인수는 불가능했다¹³⁾. 한국이동통신이 성장하기까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정부 특혜로 ‘주인’이 된 선경은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며 현재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데이콤을 장악하기 위한 94년 럭키금성(당시)과 동양그룹간의 전쟁은 불법과 위장을 총동원한 첨보전의 양상을 띠었다. 럭키 금성은 체신부 전환사채 매각 공개입찰시 납품업체, 위장계열사의 친인척을 동원해 지분율을 17.29%로 올렸다. 기존의 최대주주이던 동양그룹의 지분율은 16.36%이다.

통신사업의 이윤을 쫓아 ‘돈벌이’에 나서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체신부는 럭키금성과 동양그룹간의 싸움을 애써 외면하는 가운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체신부는 지난 91년 2백80억원어치의 데이콤 전환사채를 사들여 두번의 입찰을 통해 원금의 11.24%에 이르는 3천1백48억원에 되팔았다. 이렇게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그룹의 사채매입경쟁으로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장당 8억1천여만원)보다 70%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5% 주식매각(94년) 또한 ‘돈놓고 돈 먹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주식을 매각하기 직전 내년(95년)에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해 한국이동통신처럼 주식을 사놓으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투기심리를 부추겼다. 게다가 국민주 방식의 주식매각을 없애, 국민들의 참여를 막음으로써 재벌의 이해를 반영해 주었다. 어차피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먹힐텐데 잘될 때 높은 가격으로 팔자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재벌 위주 정책으로 재벌의 통신시장 진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은 ‘더 많은 규제완화’, ‘더 빠른 민영화, 분할’을 요구하는 등 아직도 불만이 대단하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재벌들은 통신사업을 쪼개서 나누어 갖고 있다. 이제 그 대상은 한국통신이다. 한국통신 민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쟁력 강화 선도는 대기업 밖에 없다’, ‘통신시장 개방 압력이 심하니까 완전개방이 되기 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빨리 재벌에게 매각하라’. 그러면서 경제력집중, 재벌독식의 비판이 일자 ‘중소기업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을 ‘돈벌이’나 기업의 ‘이윤창출’로만 사고하고 있는 재벌에게는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기간산업’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대할 수도 없다. 현재의 한국통신처럼 산간오지 및 낙도에 전화공급, 112,113,119 등 긴급전화 무료제공, 114안내 무료제공, 국산장비 상용화 시험운용 및 설치,

시내전화 적자운용, 생활보호대상자 전화 요금 할인, 국가기간통신망 할인. 시내요금 인하 등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국가 중추신경망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통신사업에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특혜와 담합으로 재벌에게 내주는 것은 경제력집중화, 업종전문화, 문어발식 경영 억제라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¹⁴⁾.

국내통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외국의 거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기간사업체를 양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외국 거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재벌에게 우리의 통신사업을 맡길 수는 없다. 오로지 민영화를 통한 분할과 나눠먹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경쟁과 효율이라는 기업의 논리에 입각한 공기업 민영화·사업분할 정책, 국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토론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분할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2. 통신사업 구조조정과 한국통신의 민영화

14)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장하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민영화과정에서 벌어지는 재벌의 온갖 추태와 정부의 비일관적인 자세이다. 정경유착과 특혜서비스가 난무하던 노태우 정부의 말기였음에도 정보산업의 선진화를 늦출 수 없다는 명분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소신껏 밀어부쳤던 정부가, 문민정부 하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선정권을 포기하고 재벌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고 말았다. 제2 이동통신에서와 같이 재벌의 공기업 인수는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화 정책이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정부의 직무를 포기하고 정치적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경련이 나서서 재벌끼리 경영권을 나누어 갖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공기업의 민영화가 새로운 재벌경제 시대를 도래시키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된다.

인수자금 능력만을 가지고 정부가 재벌들에게 합의에 의한 나누어먹기식을 계속 허용할 경우 재벌지배체제의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자금부족과 과다한 금융비용 때문에 경쟁이 어렵다고 하는 재벌들이 전문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나 신규업종의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공기업 인수에 주력할 경우 민간투자를 내쫓고 정부투자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부채에 의존하여 인수할 경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재벌의 자본과 인력을 전문업종에 진출시킴으로써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벌참여를 제한하지 않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가전체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13) 「한겨레 21」, 94. 6.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개방압력에 정부와 독점재벌은 개방을 전제로 하여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통신산업의 경쟁체제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주식매각과 신규사업자선정(사업불허)로 나타나는 민영화이다. 사실 민영화는 통신산업에서만의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내외의 공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것도 대세로 드러났다.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자.

전후 활기찬 성장을 구가하던 세계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이윤률 저하를 경험하였고, 석유위기를 계기로 폭발한 1974-75년 공황에는 저성장과 물가인상을 동반하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1981-82년에도 세계경제는 심각한 공황을 경험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효율적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데올로기와 '국가경쟁력'과 '경제전쟁'을 모토로 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대두하였는데 소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이 흐름은 정치적으로는 레이건과 대처, 그리고 콜의 집권으로 나타났다.

이 정치경제적 사조는 엄격한 화폐관리, 정부의 개입축소를 주장하면서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고 '탈인플레이션' 정책을 추구하였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등장한 각국의 신보수주의 정권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지출자체가 불균형의 원천이자 시장경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공적 지출(사회적 지출)은 최소수준으로 감축시켰다(한편 군사적 지출규모는 유지되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작은 정부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복지(welfare)국가가 전쟁(warfare)국가로 바뀌어버렸다). 사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의 내용은 국민들이 투쟁으로 생취해온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본축적을 돋자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사회복지의 축소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무상으로 주어지던 서비스가 유료화하거나 원가이하에서 주어지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원가(적정이 윤 포함)로 제공되기도 하고 운영주체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사로 또는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광범한 의미에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억제나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불안이 야기되었다. 노동조합은 약화되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졌다.

이런 사조의 유행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2년, 93년의 한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황에 빠져 있었다. 1989년을 기점으로 3저 호황이 사그러들자 국가와 자본은 신도시 건설 등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인위적으로

진작시켜 90년대 초반 경기가 반짝 되살아나기도 하였지만, 세계적인 불황과 과잉투자가 겹치면서 다시 경기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었다.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면도는 등 그 양상이 자못 심각하였다.

이에 국가와 자본은 총액임금제,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 고통분담론 등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임금을 억제하였다. 연공서열제에 대한 공격과 직무직능급 도입, 신인사제도에 대한 관심도 이즈음이었다. 시장과 민간중심의 경제가 주창되었다. 대통령의 경제교사가 된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이데올로그들이 총체적인 합리화공격을 지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규제완화, 민영화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의 주장들이 광범하게 제기되었다.

재벌들도 조용히 있지는 않았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민영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시기는 1993년 10월 공기업 경영개선과제가 발표되기 몇달전이었다.

▲ 1993년 10월
▲ 1993년 10월

삼성 이건희회장은 15일 고려대 강당에서 한국경영학회(회장 김해천교수)가 뽑는 올해의 경영자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강연을 했다. (중략) 그[이회장]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기업이 삼위일체적 역할분담을 해야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 민간부문 경제활동영역의 확대와, 교육 등 "사회적 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¹⁵⁾

이런 마당에 공기업에 대한 공격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10월 공기업 경영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게되는데 1주일도 되지 않아 공기업 경영개선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2개월도 채되지 않아 68개에 이르는 공기업이 민영화 및 통폐합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5개 거대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경영진단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김영삼정부의 '주인찾아주기'식 민영화가 재벌 비대화, 국가독점의 민간독점화, 서비스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민영화라는 지적은 많이 있어 왔다. 그런데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사실은 민영화가 공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공격차원에서 기획이 되었다는 점이다. 기획원(지금의 재정경제원)에서 작성한 '공기업 경영개선과제'(93.10.9)를 보면, 직원수, 임금, 명예퇴직제도, 휴가일수와 휴가수당, 노조전임자수와 노조활동 지원비용, 임직원 사택보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구입·임차자금 융자제도 등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영개선과제'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비용과 제반 경비를

15) 중앙일보 1993년 5월 15일

겨냥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과도한 간섭, 요금(가격)설정의 적절성, 기술개발 등 주요 경영사항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조합원이나 일반직원의 임금 및 복지의 억제와 축소, 인원삭감을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통신 민영화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경영진단반의 『한국통신 경영진단 종합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인용해보자.¹⁶⁾

한국통신은 새로운 기술환경, 수요환경, 국제환경, 정책환경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경쟁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기술과 수요의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변화이고, 국제환경이란 세계통신산업이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경영화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몇개의 거대 종합통신업체가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환경변화이다.

정책환경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가 규제완화와 민영화정책을 펴고 있다 는 것 자체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껏 몇차례의 민영화정책을 펴 왔는데 지금의 제 4차 민영화는 1993년 10월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지나친 복지, 과다한 노조지원 등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명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쇄신방안의 하나로 계획된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경쟁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정부의 통신시장에 있어서 기본정책 방향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며,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일반 및 특정통신의 사업영역 폐지, 시외전화의 경쟁체계 구축, 신규서비스 도입 등 세가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경쟁상황은 매우 복잡해지는데 기간통신과 PCS 시장에서의 데이콤(럭키금성 그룹, 동양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다툼이 격심하다), 이동통신분야에서의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이동통신(포항제철과 코오롱이 대주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청 등의 CATV 등의 방송 및 고도통신사업으로의 진입 예상, 통신설비기기 제조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의 전화사업 참여가능성 등만을 보아도 그렇다. 여기에다 미국 등 통신선진제국의 한미통신협상과 UR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 및 직접투자가 덧붙여지면 경쟁상황은 가히 폭발적이다. 진단

16) 한국통신 경영진단 컨소시엄, 『한국통신 경영진단 종합보고서』, 1994.12.21. 경영진단반의 연구팀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보고서('94.10.15), 제4차 workshop 보고자료('94.11.21), 종합보고서 등을 내놓았고 95년 1월부터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민영화 구체방안을 연구하였다 한다. 이 후속연구에서는 후속연구 중간보고서(95년 4월)를 제출하고 있다.

반의 보고서는 이런 경쟁상황에서 한국통신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계적 사업자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경영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내부능력 진단을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의 근본원인을 단순화하여 요약할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한다. 즉 자율경영능력의 제한은 정부규제 때문에, 조직경직성 및 비효율과 탄력적 시장적응 실패는 관료주의적 조직문화와 집권화되고 관리비대화가 진행되고 지나친 조직분화가 이루어진 조직구조 때문에, 차별적 관리비용과 직렬간 갈등은 이질적 부문이 결합된 조직구조 때문에, 비효율적 업무절차는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생긴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통신의 공기업적 위치에서 비롯되며 결국 낮은 경영효율과 노사갈등 심화, 종업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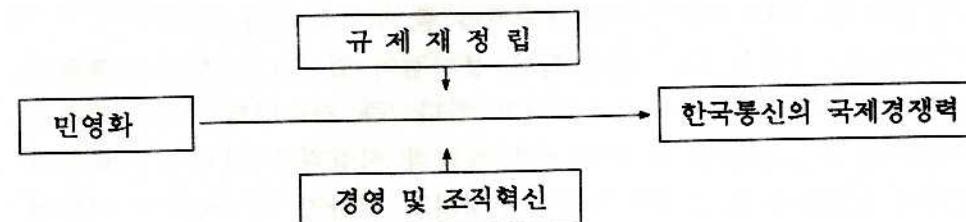
그래서 남는 것은 한국통신의 공기업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즉 민영화가 치유책이라는 것이다.

<그림 II-1> 경영진단반의 '한국통신 문제점 종합'



진단팀은 한국통신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민영화이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한국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민영화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국통신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를 재정립함과 아울러 한국통신 내부의 경영 및 조직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그림 II-2> 경영진단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분석의 틀'



요약해보자. 한국통신은 급격한 기술, 수요환경 변화와 국제환경변화,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영화정책에 따른 경쟁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초고속통신망 건설에 일조하고 세계적 통신업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공기업체제를 벗어나 민영화되어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고 인사 조직상의 재편을 통하여 경영혁신을 이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진단반의 보고서에는 한국통신이나 한국의 통신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도 실증이나 논증이 차분히 되지 않고 단순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민영화의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이 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미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민간에 이양되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정책당국자가 굳게 믿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데 불필요하게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보자.

보고서에는 한국통신산업과 한국통신의 경쟁력이 절대적 열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¹⁷⁾

■ 통신산업의 경쟁력 지표

- ① 유선전화 적체 없이 보급, 그러나 무선통신기술, 데이터베어스의 숫자,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
- ② 기술수준 : 미국 100, 일본 50, 한국 15

■ 한국통신의 국제경쟁력

- ① 회선수 세계 8위, 그러나 매출규모는 23위
- ② 1인당 노동생산성 : 미국 AT&T의 62%, 일본 NTT의 52%
- ③ 조직, 인력관리측면에서 NTT는 연 4%, AT&T는 연 3% 감원인데 비하여 한국통신은 3% 이상의 증가

17) 한국통신 경영진단 컨소시엄, 앞의 책, '제1절 경영진단의 배경 및 목적'

④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측면에서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절대적 열위

몇가지만 지적해 보자. 첫째, 기술수준 경쟁력지표의 근거가 모호하다. 둘째, 인력증감의 비교도 매우 단편적이다. 제대로 비교가 되려면 매출증감에 비한 상대적 인력증감을 따져보아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을 일본이나 미국의 산업이나 기업들과 경쟁력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통신산업이나 한국통신이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어떠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넷째, 회선수와 매출규모의 순위비교는 각국의 통신업체가 포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선수와 매출규모간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서비스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텐데 이것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인력 규모의 업체 간 비교에 있어서도 기업규모는 고려되지 않고 절대비교를 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상대도 대만이나 홍콩 싱가폴 등의 통신업체가 아니고 미국 일본 영국의 업체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한국통신이 절대적 열위라 한다.

아뭏든 이렇게 뚜렷한 근거없이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판단되고 진행되는 한국통신의 민영화의 내용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통신에서의 민영화는 주식매각과 신규사업자선정(사업불하)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매각을 기정사실화해 오고 있다. 94년 말에 마무리된 1차 경영진단의 내용은 한국통신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공기업형태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98년까지 거의 완전히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시상황과 선거정국으로 인해 주식매각계획이 표류하거나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나옹배 재정경제원 장관의 발언으로 비춰보건대 정부의 주식매각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¹⁹⁾

정보통신부는 95년 7월 4일자로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수립'이라는 자료에서 한국통신의 소유구조에 관하여 경영상의 자율

18) 민영화라고 하면 주식매각과 경영권의 민간이양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통신이 담당하고 있던 서비스나 독점적으로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서비스가 민간기업에 불허되는 것도 한국통신의 민영화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 후자의 범주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해당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이나 해당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통신 구성원에게 민영화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19) 매일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

성·융통성 확대 항목에서 통신사업 경영상의 정부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동법 제 2조를 개정(KBS의 예)하거나 정부지분을 49%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간 정부와 경영진단반이 제시해 온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부주식매각방안은 다음 표와 같았다. 그런데 95년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계획에 의하면 1996년 이후에도 정부지분이 51%여서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표 II-1> 기존의 정부의 주식 매각방안
(단위 : %)

년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매각계획	10	10	14	15
정부지분	90	80	66	51
민간지분	10	20	34	49

경영진단반에서는 민영화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설비비예수금(24%에 상당)을 주식으로 상환하고, 일반매각도 늘려 1998년 이후로는 완전매각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경영진단반이 정부의 주문을 그대로 옮겨적고 있다는 것은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지분매각비율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1994년 12월 종합보고서 본문에서는 96년도 일반매각을 15%로 해놓고선 맨 나중에 급히 작성한 요약문에는 20%로 올려놓고 있다. 후속연구 중간보고서에는 물론 20%로 제안하고 있다).²⁰⁾

20) 95년의 일반매각분이 매각되지 않았고, I 안의 경우 설비비예수금의 주식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I, II 안 모두 관철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진단반의 견해가 정부의 견해를 거의 옮겨놓았다(특히 주식매각의 경우)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이 관철되지 않은 이유를 진단반의 견해가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증시사정이 좋지 않았던 데서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증시예측을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결국 정책결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예는 또 있다. 작년 지방자치 선거 직전의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경상현의 설비비예수금 반환 발언 약속, 노조의 끈질긴 요구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국통신의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결정 등등. 현재의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통신산업구조개편도 이렇게 특수 계층 혹은 특정인의 이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표 II-2> 경영진단반이 제안한 향후 한국통신 주식매각 계획(일정안)
(단위 :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I	II	I	II	I	II	I	II
매각지분	38	14	20	44	15	15	0-7	0-7
민간지분	58	34	78	78	93	93	93-100	93-100
정부지분	42	66	22	22	7	7	7-0	7-0

주) I: 1995년 설비비예수금 주식상환의 경우 (제 1안)
II: 1996년 설비비예수금 주식상환의 경우 (제 2안)

보고서는 민영화의 목표로 "소유권과 경영권의 민간이양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들고 있으며 민영화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 ① 대기업이나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의한 인수
- ② 콘소시움에 의한 인수
- ③ 영향력 있는 대주주(액 1%~3% 정도의 지분소유)와 소액주주들에 의해 감시되는 민영화

그런데 보고서는 재벌의 경제력집중방지 등의 이유로 ③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의 한국통신 주식 보유는 불가능하게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 94년의 중간보고서(1994년 10월)를 보면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으로서 대기업의 참여문제를 놓고 '참여허용', '참여제한', '참여지분 제한', '상위재벌 배제'의 선택안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후 보고서들에서는 대기업의 참여여부 문제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
- 94년 종합보고서(1994년 12월 21일)에서는 지분의 상한을 1%로 제시하다가 후속연구에서는 3%로 늘렸다.

즉, 중간보고서까지는 대기업의 배제도 고려하였다가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더구나 지분비율을 불과 몇개월 사이에 1%에서 3%로 늘려 놓고 있다.

그런데 상한을 3%까지로 할 때 이 3%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3%의 액면가 = 한국통신의 자본금 약 1조4천4백억원 × 0.03 = 432억
 # 3%의 주식가액 = 432억 × 10배 = 4,320억
 (한국통신의 94년 말 입찰시 최저낙찰가가 47,1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액면가의 10배 정도로 계산을 해야할 것임)

즉, 3% 지분의 주식가액이 4,320억원에 이른다.

이런 정도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재벌뿐이다. 94년 주식매각 당시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어렵잖아 추산한 한국통신의 주식가액이 약 14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어떤 재벌도 현재 한국통신을 통째로 소유할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는 오히려 현재의 재벌의 자금력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상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재벌의 자본력이 이를 능가할 때에는 로비를 통하여 얼마든지 개정될 수도 있다(정부는 일전에 통신설비업체의 로비로 설비업체의 전화사업 지분소유한도를 3%에서 10%로 바꾼 바 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재벌은 3% 상한 규정하에서도 더 많은 지분을 사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럭키금성그룹은 데이콤주식을 3% 밖에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설비제조업체의 지분소유상한)하에서도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2~3개만 연합한다면 일반기업에서 대주주와 비슷한 역역할을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계획대로라면 한국통신은 주식은 소액주주들에게 잘게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주식매각처럼 직접적인 민영화는 아니지만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사업분할(실제로는 재벌에게 불하)을 보도록 하자.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의 데이콤, 이동통신의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이후 한국통신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통신산업 정책방향이 95년 7월 4일에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수립'(이하 '기본방향')으로 발표되었다. 그 뒤 조금씩 변화를 겪긴 하였지만 최근의 PCS, TRS, CT-2, 제3 국제전화 사업자 선정 등이 다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에 따라 올 6월 이전에 PCS, TRS, CT-2, 무선데이터, 국제전화 등 거의 모든 통신사업에 신규사업자를 허가하여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통신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입조건과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96년 하반기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신규로 승인되고, 97년부터는 허가제도를 자유신청제

로 전환하며, 98년부터 매수합병 및 분할이 허용된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98년부터는 WTO(세계무역기구)/NGBT(기본통신협상그룹)에서의 협상결과에 따라 97년 중에 법을 재개정하여 단계적으로 국제경쟁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법을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법우위는 고사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등의 지위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대등한 협상자세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의사가 내부적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밟으면 경쟁체제가 구축될까(경쟁체제 자체가 지난 문제점도 적지 않지만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자)? 불행하게도 경쟁체제 구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쟁체제구축을 단순히 사업자수에 의해서 판단해 보자. 몇개의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두세개의 사업자에 의해서 담당이 될 것인데 이것은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숫자는 못된다. 서비스간 대체효과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조금이야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 것이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독과점상태에 머물 것이다.

둘째, 시내망보유자인 한국통신과 이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간에 접속료산정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유자와 이용자간의 협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여지가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사업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경쟁체제는 진정한 경쟁체제라 할 수 없다.

셋째, 사업자간 힘의 차이에 따라 각 서비스 내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분제한이 폐지되고 매수 합병이 허용된다면 이 과정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결국 각 서비스는 내외독점자본들이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경쟁체제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영국의 Booz Allen 보고서는 2000년에는 세계에서 5개의 통신사업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다.²¹⁾

한편 기본방향에는 한국통신의 주도적 사업자로의 육성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야야 한다. 한국통신 경영을 부실하게 한 정부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관련법 개정의 일정은 신규사업자 선정 등의 그것과는 달리 명확한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채 '계획'중이거나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무선 등 다양한 통신사업에의 참여도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세계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할

21) 한국통신 경영진단 콘소시엄, 앞의 책, II-17 쪽 참조.

'계획'이다. 다만 다양한 경영혁신방안만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국통신을 주도적 사업자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선의로 믿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업영역을 하나둘씩 빼친 재벌들과 통신선 진체국의 압력이 있을 경우 이것에 대항하여 정부의 현재의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없을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겠다. 정부는 통신사업 구조조정과정과 미국의 통신개방압력에 직면하여 결과적으로 보면 매번 내외독점자본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해본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나 싶다. 정부가 한국통신을 주도적 사업자로 키우겠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애초부터 한국통신의 방만한 경영(누가 경영을 했는데?)을 현재의 공기업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한국통신이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통신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내외독점자본에게 넘겨주면서 한국통신은 고사시켜 가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민간에게 팔아치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대공기업을 '노조기업화'해서 '국가전복기도'를 일삼을 노조도 격퇴시킬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이는 최근 한국통신에 할당해주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던 PCS사업이 자회사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변경된 지침을 보아도 우리의 의심이 근거있는 의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PCS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재삼 확인된 정부의 한국통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²²⁾ 정부와 한국통신 경영진은 PCS를 한국통신 본체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그럴 경우 PCS 사업본부가 경쟁사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려면 동등한 자격을 갖춘 다른 한국통신 노동자들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확보해주어야 할텐데 정부와 현재의 한국통신 경영진은 그럴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통신은 기계적 평등주의가 만연된 기업문화를 가진 비효율적인 공기업이고 한국통신노동자들은 현재도 연공적 인사제도에 의하여 지나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모회사의 낮은 근로조건과 자회사의 높은 근로조건의 차이를 메꿀 수 없다는 경영진의 이 당당한 발언!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형태의 PCS 추진이 조직분할의 시발점도 아니고, 자회사의 이익은 모회사에 반영되며, 자회사에 대하여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경영진의 설명이 도대체 한국통신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라는 것인가? 한국이동통신, 데이콤, 재벌통신사, PCS 추진 자회사 등의 노동자와 한국통신에 남겨진 노동자!²³⁾

22) 한국통신, 「PCS사업 추진방안 검토」, 1996.4.

23) 그런데 다른 통신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이 한국통신 노

결국 한국통신을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말은 빈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어떻게 될까? 물론 임금상승은 억제될 것이고 고용은 불안해질 것이며 노동강도는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경영혁신 혹은 내부 비효율 제거이다. 한편 작년에 채용된 데이콤의 경력사원에는 한국통신노동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한국통신은 젊은이들이 하나씩 둘씩 도시로 떠나 여성과 노인만 남은 우리나라의 농촌의 모습처럼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조의 동의나 국민적 토론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²⁴⁾

첫째, 정부는 민영화를 통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통신산업체의 집중화, 거대화의 경향에 비춰보면 경쟁체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통신서비스 전부문에 걸쳐 거의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람직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 경우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내망까지도 2개 이상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의 사회적 낭비를 생각해 보라. 대체적인 상은 거대 공기업이 담당하던 역할을 몇개의 민간 독점기업이 담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외국 독점체가 끼어들 가능성도 다분하다. 엄청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된 독점적인 사업을 독점대기업들이 장악할 경우 여기에서 오는 폐해, 비효율은 현재의 공기업체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 특히 PCS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현대, 엘지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가운데에서도 95년에 각각 2

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을까? 결국 한국통신노조의 무력화와 근로조건 악화는 현재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다른 노조로 옮겨갈 것이다. 다른 통신산업노조들의 한국통신에 대한 연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24) 노조의 동의는 고사하고 정부나 경영진단반에서는 노조에게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진단반의 보고서 내용이 신문에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노조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5만이 넘는 조합원이 정부나 자본이 보기에는 이등시민일 뿐이었다. 민영화나 통신시장 개방 등 정부정책에 관여하는 노조를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보지 않거나 파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국가전복' 발언도 노조원들을 이등시민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매 한가지다.

조5천억원, 8천3백40억원, 7천7백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또한 대부분이 신규통신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30대 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3백17조5천2백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나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국민총생산(GNP)의 9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독점재벌들은 이제 최후로 남은 공공성이 강한 통신산업을 장악하여 국민과 노동자들의 회생하에 막대한 돈벌 이를 할 꿈으로 가득차 있다. 이들이 돈벌이에는 필연적으로 중소기업의 몰락, 소비자의 피해, 노동자의 무권리가 동반될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의 성격을 가진 정보통신산업의 내외독점자본에 의한 장악은 국민들의 의식까지도 기업주의적 의식으로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

둘째, 민영화는 서민대중의 이용율이 높은 시내전화의 가격을 높인다. 시외전화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시내부문도 민영화가 되면 원가에 기초하여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산업이 민영화된 국가에서는 예외없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통신산업의 공공성 약화, 즉 보편적 서비스의 훼손을 의미하는데 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소홀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정보화사회,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다수 서민이 고급 정보통신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셋째, 민영화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으로 대표되는 미래 통신산업 투자를 불구하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할 투자가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개별 민간업자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는 없다.

넷째, 민영화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조를 약화시키며 그로 인해 임금억제와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경영진단반에서 제출한 초기의 보고서에 보면 민영화의 일환인 기능재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거대 공기업의 노조기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선로보수유지부문과 114를 떼어내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각 부문 인력의 고용과 임금을 차별관리한다는 것이었다. 노조의 양적 질적 축소를 통한 합리화는 정부와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다. 이런 생각은 작년 대통령의 '국가전복'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통신 노조를 무력화시켜 크게 보면 총자본수준에서 작게 보면 한국통신 수준에서 '노동규율'을 확립하고 임금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통신사업자간의 비대칭적 규제(신규사업자에게의 일방적 특혜)만으로도 고용불안, 노조약화, 노동강도 강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

에서 본다면 노조가 정부의 통신산업정책 전반을 문제삼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III. 맷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통신시장 개방과 한국통신 민영화의 과정과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신시장 개방협상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주식매각과 신규사업자선정이 노조와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음에 통신시장 개방 재검토 및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 재고를 위한 일곱 가지 제언을 맷음말로 정리하겠다.

첫째, 우리는 통신산업 정책이 다음의 항목을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 (1)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의 공적 의무 - 공공성 축면
- (2) 통신산업의 기간산업적 특성 - 통신주권, 정보주권
- (3) 국민 및 통신산업 노동자(조직구성원)의 동의 - 조직 발전 방안은 조직발전의 주체인 조직구성원들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통신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 즉 '보편적 서비스' 문제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나라와 시대상황에 따른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나 이 수준은 각 나라와 시대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가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도 누구나 전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어디에서도 이용가능한 것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할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OECD와 미국 REA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정의와 비교해 볼 때 보편적 서비스를 아주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력에 걸맞게 국민들이 누려야 할 사회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시내 전화에서 무선통신 이동통신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포괄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국통신의 공익성,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림 III-1> 통신산업의 공공성과 한국통신의 공적 의무

① 통신산업의 공공성
② 통신의 비밀보장
③ 국내외 정보의 원활한 유통 확보, 국가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
④ 전기통신에 의한 국가나 사회의 안전 확보 등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것

통신산업의 공익성

- ① 충분하고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 공정하고 안정, 지속적으로 공급
- ② 통신의 비밀보장
- ③ 국내외 정보의 원활한 유통 확보, 국가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
- ④ 전기통신에 의한 국가나 사회의 안전 확보 등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것

공적 의무

- * 보편적서비스 제공(기본법 25, 26조)
- * 통신의 비밀 보호(정보 유용 방지, 사업법 54조)
- *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의 실행 (기본법 25, 26조)
- * 중요통신과 비상통신의 확보(기본법 22조 등)

정부 통신 정책 수행

- 연구개발, 통신체조업 육성
- 초고속 통신망 구축 (15년간 43조원)
- 북한 통신망 구축(10-26조예상) 투자

둘째,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대표로서 맷еть하고 당당하게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통신정책, 국민의견수렴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으로 통신주권과 정보주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WTO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의 계획에 따르면 96년 4월에 기본통신협상을 마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협상에서 대미 굴욕적이고, 비자주적으로 임해왔다. 이와 같은 태도로는 기본통신분야까지 외국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내주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신시장 개방협상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은 자주성이다.

통신산업은 한 국가의 정치·군사·경제·문화의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산업분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통신주권이 국가의 안보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국의 통신망과 통신서비스가 타국에 장악되는 것은 곧 주권의 포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통신시장개방에 적극적인 나라일 수록 통신주권의 개념을 보다 일찍 인식하고 자국의 통신산업을 육성해온 나라이다.

정부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외국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장 개방논리가 국내 통신시장의 식민지화, 기술종속화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의 명실상부한 주인인 국민에게 협상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통신시장 개방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민간통신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또한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업목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 예상된다. 한국통신의 발전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이 그 방안이 될 수 없다.

한국통신 민영화는 '보편적 서비스'를 후퇴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애초의 취지였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결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²⁵⁾.

넷째, 통신산업의 기간산업적 특성상 통신관련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국가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한국통신이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현재 통신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은 장기(15년여)에 걸쳐 거대자본(45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주체로서 지배적 사업자(기간통신망을 운영해온 한국통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통신이 민영화된다면 통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시장을 다 내주게 될 것이다. 또한 민영화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통신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으며, 또한 남북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통신망 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민영화된 통신사업자가 조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도 민간기업의 투자 및 재무운영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로 된다. 한편 민영화 이후의 민간경영진은 배당압력 등을 고려하여 단기영리를 중시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시설투자 및 연구관련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국가전체적으로 통신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통신의 경영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 한국통신과 정부와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규범이 확립되고, 이에 의해 정부

25) '많은 사람들이 한국통신 사유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예를 볼 때 이는 설득력이 거의 없다. 이보다는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신기섭, 위의 책, p19

의 임의적 간섭이 배제되고 한국통신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통신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통신주권의 수호는 정부만이 떠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통신시장 개방문제와 우리나라 통신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국민여론의 동의를 얻는 통신정책이 수립될 때 정부의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는 태도가 주체적이며, 자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주권 확립과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범국민 정책기구'가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통신사업자, 통신산업 노동조합, 정보통신 정책입안자, 전문연구소와 학계, 소비자 단체 및 사회운동 단체 등이 참가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자주적 통신정책을 입안하고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체들의 공익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국민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더이상 단순한 정책결정 수용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국민 생활에 깊숙히 관계된 통신정책 문제는 더 이상 몇몇 정책당국자들의 것이 아니다.

여섯째, 위 기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적·공익적 통신정책이 수립된다면 이를 시행할 주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통신과 같이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기업은 그 운영주체에 한국통신 노사 양자와 함께 국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을 운영주체로 내세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운영주체로 개입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 스스로 국민이 대주주인 공기업 경영의 운영주체로 참가하는 방안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자, 노동조합, 공중(public)의 3자가 한국통신의 운영주체로 서서 책임자율 경영체제(예, 한국통신 경영협의체 구성)를 수립하는 것이 한국통신의 공익성, 자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기업 민족기업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설정의 뜻대로 3자체로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

개인 휴대 통신(PCS) 사업자 선정 문제점과 대책

김영철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지도위원)

1. 정보 통신 정책의 의의

최근 정보 통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사회의 하부 구조(infrastructure)로서 국가 산업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막대하고,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이 국민의 생활과 이전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더욱이, 오는 6월 정부의 개인 휴대 통신(PCS)을 비롯한 신규 통신 사업자 추가 선정 계획에 따라 통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벌, 언론, 관련 업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정책의 본래적인 목적은 정책의 수립, 시행을 통하여 국익과 국민 편익의 향상을 피하기 위함이다. 정보통신 정책의 목적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격, 즉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 부문의 정책과 구분되고 있다.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라 함은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 두루 정보통신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정책의 의의는 정책의 수립, 시행을 통하여 국익과 국민 편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적 가치를 함양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정보 통신 정책의 평가

1982년 정보통신 부문의 정책자(정보통신부)와 사업자(한국통신)의 분리 아래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통신 시장 개방과 통신 사업의 분리, 분할'이었다. 정부의 이 정책 기조는 한미간의 통신 개방 협상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국내 시장의 경쟁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한국통신이 제공해 오던 이동 전화 서비스 사업을 한국 이동통신(주)으로 분리하였으며, 이후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던 데이터콤의 국제, 시외 전화 참여에 이어 최근에는 기간통신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는 정통부 산하 연구 단체와 관련 학자들의 '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라는 용호 아래 일사불란하게 정책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었다.

정보 통신은 이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 때문에 일반 국민이 정책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정부나 관련 연구 단체조차도 정보통신의 기술적, 미래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도 이른바 전문가 그룹이나 일반 국민이 이를 검증해 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국 광역 자동화 사업

전국 광역 자동화 사업은 전국의 산간 벽지 마을까지 자동식 전화를 공급하는 아심찬 계획으로서 80년대 초에 시작되어 87년에 1차로 완성되었다. 이 결과 그간 만성적인 전화 가설 적체 현상이 해소되었고, 1 가구 1 전화 시대의 도래로 국민의 통신 이용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광역 자동화 사업은 세가지의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의 광역 자동화 사업이 미국에서는 수명을 다한 아날로그 반전자식 교환기를 처분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구상되었다는 점이다. 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이미 시간 분할식 전전자 교환기가 개발되어 아날로그 장비를 대체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전화 시장은 미국에서 폐기된 기술과 장비를 해결하고, 특히 84년 분할 이후 새로운 전기에 놓여 있던 미국 전신 전화 회사(AT&T)의 결정적인 자금원으로 활용되었다. 광역 자동화 완성 이후 미국은 AT&T 등 미국 통신 사업자를 앞세워 한국의 통신 시장 개방 압력을 현실화하였다.

둘째, 전화 교환 방식의 자동화에 따라 당연히 낮아져야 할 시외 전화 요금이 수동식 교환방식 때보다 대폭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자동화 이전 서울-부산간의 한 통화(3분)당 420원이던 시외 전화 요금이 자동화 이후 오히려 1,5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국민 편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광역화 당시 국내에서도 광케이블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빨리 빨리'에 쫓겨 전국의 국토에 기존의 동축 케이블을 매설함으로써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시 광케이블로 교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통신이 90년대 중반에 시도했던 협대역 ISDN 시범서비스가 실패한 것은 다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광케이블이 포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참여하에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국민적인 의지를 모았더라면, 다소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전전자 교환기의 도입과 기술 이전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써 막대한 재원의 절약과 장기적인 계획 하

에 좀 더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복지 통신 제도

통신 개방에 따른 국민적인 비난과 관심을 호도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보통신 정책 가운데 복지 통신 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전화 요금을 일정 정도 할인해 주는 취지의 이 제도는 시행 당시 언론과 국민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이 제도의 문제는, 요금의 할인 혜택이 유공자, 장애인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등록하기만 하면 누가 사용하든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 통신의 요금 할인은 통화 금액에 대한 비율보다는 기본료 등의 일정 금액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의 복지 통신 제도는 미국 등 통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 통신 개념과 비교해 보면 그 허구성이 금세 드러난다. 미국의 복지 통신은 통신 시스템의 장애 발생 또는 전시 등 가입자의 통화를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통신 제공 순위를 제공하고, 통신 서비스 가입의 적체시에 우선적인 사용 허가 등을 제공한다. 이에 비추어, 한국의 통신 우선 순위에는 국가 기관 및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어질 뿐 장애인에 대한 우선권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통신 서비스의 적체시 승낙 우선 순위에도 국가 기관, 언론 기관, 고급 공무원 등은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그 스스로 고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일반인과 같이 마지막 순위(4순위)에 해당된다.

전화 적체 현상이 없는 지금은 승낙 순위가 사문화되어 있으나 부분적인 적체 현상 재발시 이 순위는 준용된다.

(3) 통신 개방과 통신 사업 구조 조정

통신 사업 구조 조정은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통신 사업의 분리, 분할, 신규 통신사업자의 추가 선정 등을 말한다. 통신 구조 조정은 89~90년 한미 통신 협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통신 시장이 국내 기업에 의해 미리 경쟁화해 둘로써 미국 기업이 용이하게 상륙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민적인 관심이 88 올림픽에 쏠려 있던 87~88년에 당시 체신부와 미국간의 이른바 '한미 통신 협의회'라는 것이 개최되었는데, 정부는 이 협의회에서 '한미간 공통 관심사가 논의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동 협의회가 이후의 통신 협상과 통신 사업 구조 조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한미 통신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전기 통신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정부는 관련 학자들과 한국 통신의 고위

관계자들이 망라된 '정보 통신 발전 협의회(정발협)'를 급조하여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으며, 동 보고서는 89년 9월 그 초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정발협 보고서의 초안은 '데이터 통신 부문을 90년대 중반에 경쟁화하고 장거리 통신의 경쟁 여부는 90년대 후반에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시 체신부 차관 주재 회의 (1989. 9. 28. 당시 신 윤식 체신부 차관) 에서 이 내용은 '데이터 통신은 지금 즉시 경쟁화하고 장거리 통신은 90년대 중반에 경쟁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3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동 보고서를 미국측에 제출하면서 시간이 촉박하여 미처 영역하지 못했음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글 해독자가 많아 상관 없다'며 한국측 협상 대표를 위로했다. 미국은 보고서의 내용에 만족했다.

이상의 사례는 통신 개방과 통신 사업 구조 조정이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추진되어 웃음을 증명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통신 사업 구조 조정이 순전히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 이를 요구하고 간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통신사업은 국제화로 경쟁화
무관하게 되었다.

(4) 경쟁을 위한 국민 편익(전국 단일 통화권)의 희생

통신 사업 구조 조정의 결과로서 한국 통신의 주식이 일부 매각되었고, 데이콤의 국제 전화(002)에 이어 시외 전화(082) 참여로써 전화 서비스의 본격적인 경쟁화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언론은 시외 전화 서비스의 경쟁화 결과로서 최고 9%까지 시외 전화를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언론과 국민도 정부의 주장을 인색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외 전화의 경쟁을 위하여 전국을 시내 요금으로 통화하는 한국 통신의 전국 단일 통화권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한국 통신 또한 이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응답했다. 전국이 시내통화권으로 되면 시외 전화 경쟁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국 단일 통화권은 87년 민자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계획대로라면 082 서비스가 시행되었던 96년인 올 1월에 1단계 (도 단위 광역 시내 통화권 계획) 단일 통화권이 시행되었을 것이고 오는 2000년에는 2단계인 전국 단일 통화권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9%라는 할인 효과를 위하여 전국 단일 통화권이라는 국민적 이익이 희생된 것이다.

이밖에도, 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하 여지의 봉쇄 (예를 들어, 무선 호출의 월 기본료는 전화 가입자의 월 평균 통화 요금의 1%에 해당된다. 95년 말 현재 전국의 무선 호출 가입자 수를 1,000만 명으로 보면 연간 1조 원대의 비용이 매우 간단한 장비만을 갖추고 있는 무선 호출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신규 출현 서비스의 개별 요금화(컴퓨터 통신 이용 요금 등) 등의 현상은 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3. 개인 휴대 통신(PCS)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대책

(1) PCS 기술 방식의 CDMA 단일 표준화의 문제점과 대책

'이동 전화 및 개인 휴대 통신(PCS)의 CDMA 단일 표준이 가지는 문제점과 대책(한국 과학 기술 청년회 편)' 참조

(2) PCS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대책

개인 휴대 통신 사업자 선정이라는 정부, 언론, 재벌들의 잔치가 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 4월 15일 PCS 등 무선 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PCS 사업자 선정 유형은 통신 장비 제조업체 중 1 사업자, 통신 장비 비제조업체 중 1 사업자, 한국 통신과 중소 기업 컨소시엄(한국 통신의 자회사) 1 사업자 등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동 전화 사업자인 한국 이동통신(주)과 신세기(주)에 각각 PCS용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모두 5개의 PCS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다.

PCS 등 신규 통신 사업자 선정은 관련 업계와 국민의 첨예한 관심 사항으로 등장해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사들이 '언론과 통신의 통합' (정부는 4월 22일 언론사와 통신 회사가 상호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을 내세워 통신 사업자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 등으로 사업권 획득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벌과 언론의 이해 관계 속에서 정작 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다. 이는 곧 신규 통신 사업자 지정이 국민의 편익보다는 재벌과 외세의 이익에 바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① PCS 사업자 심사 기준의 문제(한국과학기술청년회 성명서 96. 3. 19 참조)

정부가 발표한 PCS 사업자 선정 기준은 '업체의 사업 능력, 재정 능력, 기술 개발 계획의 우수성, 업체의 도덕성'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통신에 대한 이해 수준조차 의심 받고 있는 정보통신부 관리들이 재벌 기업의 사업 능력을 논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회의스럽기도 하거니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PCS 등의 기준, 2700MHz 비중, 네트워크 서비스

{ 이런 것들이 심사 기준으로 적절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진정 이런 심사를 공정, 객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심사 결과를 국민 앞에 꼭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특히 재벌 기업의 도덕성 부문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통신 사업자로 신청을 했고, 비자금 파동에서 보듯이 기업의 도덕성이 획일적으로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심증일 것이다. 신청 기업 모두가 설마 똑 같은 도덕성 절수를 획득하리라고 예상하지 않는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개별

기밀을 가지는 있는 사업자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확장된다.

기업의 도덕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명쾌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먼저 PCS 서비스가 현존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왜 사업자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3개 유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PCS 개념 변경에 따른 기존 셀룰러 사업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 정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PCS 사업자수는 몇인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니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 보아야 할 통신 사업자 선정을 주제구조식으로 대충 '3개로 하겠다, 4개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업체들 또한 자신들이 PCS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인 망의 구축과 저렴한 요금 구조를 창출하여 PCS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술적·경제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PCS 사업자 선정 대책

PCS를 포함한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지정은 미래의 차세대 통신 체계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 넣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파수 공용 통신(TRS)서비스나 발신 전용 서비스 등은 고도로 발달된 차세대 통신 시스템 체계 하에서는 고유한 서비스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국내외 재벌 기업들이 향후 십 수년의 시장을 내다 보고 이같은 사업에 참여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분화되어 있는 이 서비스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는 차세대 통신으로 변신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따라서 좁은 국토는 수많은 차세대 통신 사업자들의 각축장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PCS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이뤄져야 할 일은 가장 빠른 시기에 저렴한 요금으로 PCS를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PCS 망을 구축하는데 가능한 방법 중에서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축 방법에 대한 객관적·기술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는 일이다.

PCS 망은 셀룰러 망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기간망(지능망)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PCS 서비스의 요금 체계의 정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일반 전화 요금과 이동 전화 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일반 전화 요금의 전국 단일 통화권의 즉각적인 시행이 선결되어야 하고, PCS 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 통화권 체계에서의 일반 전화 요금 수준과 같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PCS의 무선 접속 기술을 TDMA를 포함한 복수 표준으로 지정하여 저렴한 부자비와 서비스의 조기 제공을 피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 의한 시장의 선점만이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

인 대안이다.

PCS 사업자의 선정은 이상의 선결 사항, 즉 '경제적인 PCS 망의 구축 방법, 저렴한 요금 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주적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정보 통신 정책 방향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통신 정책의 배경은 해외의 정책 동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결코 해외의 일반적인 동향이라고 볼 수 없는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들여오는 경향이 없잖았다. 선진 외국의 정책 동향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정보 통신에 관한 정책은 자국이 처해 있는 지리적·문화적·경제적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캐나다 등 국토가 광활한 국가에서는 국내 부문에서의 장거리 통신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 주보다, 미국 전화 회사의 일부 시내 통화권보다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환경에서는 전국 단일 통화권 체제가 적절한 것이다.

미래 자주적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 통신 정책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통신 정책 기조는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 표준화 동향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과 능동적인 참여 및 국익에 바탕한 기술 표준의 제정, 전국 단일 통화권의 조기 구축을 통한 국민 편익의 고양,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요금 체계의 인하 등은 현 시대 정보통신부가 안고 있는 우선적인 정책 과제이다. *국내외 환경에 맞춰야. ① 23년 중 32*

둘째, 정보 통신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점은 '독점이냐, 경쟁이냐'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냐, 분할이냐'는 차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서비스별로 구축, 발전해 왔던 개별 통신망들은 이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서 통합망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럽 연맹은 일찍이 80년대 중반에 '역내의 전기 통신 장비 시장 활성화에 관한 녹서'에서 '역내 각 국가는 망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망의 구축과 활용을 개별기업의 이해 관계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정, 통제함으로써 망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망의 통합화, 주권화*

셋째, 전국의 균형 있는 정보화 사업의 추진이다. 최근의 이른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미디어 벨리' 사업 계획 등은 그 타당성

과 실현 방법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의 정보화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단계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보 통신 서비스 부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보의 가공과 제공, S/W, 기술, 장비 등 부문은 기업의 창의력이 기대되는 분야에 해당될 것이다. 이같은 부문의 개발과 지원은 미진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각각 독자적인 망을 구축, 운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기억해도 밖에야~~
~~기억해~~

이상의 몇 가지로써 정보 통신 정책 방향에 대한 모든 대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관련 학자들을 통한 정책의 합리화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정보 통신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하에 이제까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익과 국민 편익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생산하는 일에 이제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추가>>

PCS 사업을 재벌에게 허용할 것인가를 문제제기하는데 중요한 점은 PCS 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느 누가 값싸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누가 사업을 하던지 간에 국민의 편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만들어 이번 사업자 신청시에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 국내 기업현실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하더라도 사업내용이 가지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그러한 제도적인 의무사항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벌이 성장하는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하더라도 재벌의 성장이 국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피부로 확인하였다. 개방과 경쟁의 세계경제 하에서 정부는 국경없는 자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토대인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추가 끝 >>

통신 노동자와 통신 이용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신 사업 구조 조정의 결과 다양한 통신 사업자가 출현해 있고, 따라서 출발점이 서로 다른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이해와 인식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노동자들은 자사의 이익보다는 국익과 국민편익을 우선하는 사고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노동자들이 민주 노동 운동이라는 큰틀 안에서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진지한 접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일본·젠텐쓰로부터의 보고

- 일본의 민영화, 분리, 분할문제에 대한 대응

젠텐쓰 중앙본부

중앙집행위원장 가지모토 고오지

1. 전기통신의 민영화에서 정보화 사회로

- (1) 구미각국의 캐리어의 움직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
- (2) 일본의 민영화, 분리, 분할 움직임과 경과의 개요

① NTT 조직

- 체신성 → 전천공사(공공기업체로 1952년) → NTT (민간회사 1985년)
- 일본국내의 전기통신사업을 담당, 이동체통신사업, 데이터통신 관계는 자회사화. NTT 그룹은 131개사
- NTT 사원은 약 20만명(1995년) → NTT 그룹전체는 약 5만명

② 1981년 전천공사를 행·재정개혁의 대상으로 「임시행정 조사회의 답신」

- 전천공사를 5년이내에 중앙회사와 복수의 지방회사로 재편 (당면, 정부 100%주식보유의 특수회사)
- 재편후, 중앙회사에서 지방회사를 분리·독립, 주식 공개
- 기간회선부분의 신규참입을 인정한다.
- 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특수회사 기간동안에도 업무범위의 확대, 탄력적 투자를 하게 함

③ 이후, 정치의 장에서의 투쟁으로

- 1985년 - 민영화로 이행하되, NTT의 경영형태 논의는 5년간 뒤로 미룸.

<자료1>

- 1990년 - 우정성은 「장거리의 분리, 지역분할」을 주장하나, 정부·여당은 논의를 뒤로미룸. <자료2>
- 1995년-일본에도 우정성은 「장거리의 분리, 지역의 분할」을 주장하나, 정부·여당(63년 3월말)은 결론을 연장하였다. <자료3>

2. 「민영화, 분리·분할반대」의 투쟁

(1) 젠덴쓰의 주장

① 기본적인 생각

- 전전공사의 민영화, 분리, 분할, 신규참입은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을 파괴하게 된다.
- 신규참입은 크림스키밍으로 참여하며, 유니버설·서비스의 유지를 도모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용자의 이익에 반한다.

② 구체적인 요구과제

i) 국민·이용자의 관점에서 - 「공개, 분권, 참여」를 기본으로 한 행정의 확립

- (a) 국민의 공유재산에 걸맞는 경영형태(출자증권방식)
- (b) 유니버설·서비스의 견지
- (c) 요금법정주의의 원칙 철폐(기본료, 수도료는 현상대로)

ii) 기타의 성과

(a) 경영참가시스템의 확립

- (ㄱ) 경영협의회 설치
- (ㄴ) 종업원 지주회의 발족
- (ㄷ) 감사역에의 노동자대표 선임

(b) 전전사업에 걸맞는 임금실현

(ㄱ) 격차시정의 해소(축년 주요기업과의 격차를 시정)

(ㄴ) 노동성과 보답되는 시스템확립(직능자격제도입)

3. 투쟁의 경험에서

(1) 정보통신정책 입안에의 적극적인 관여

① 정보통신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국민·이용자 이익의 관점에 입각한, 노조로서의 체크태세와 기능의 발휘

② 주요정책 포인트

- 통신은 「엔드 투 엔드」이며 플래그·캐리어로서의 역할
- 유니버설·서비스의 견지와 경쟁정책의 정합
- 요금정책의 확립과 벨런싱의 실시
- 규제완화의 추진

<자료4 「분리·분할에 대한 추천, 반대의논점」>

(2) 노조로서의 경영개혁에 대한 주장

① 사업영역의 확대와 고용확보, 확대

② 경영의 민주화와 체크기능의 발휘

③ 노동조건의 유지·향상

<자료1> ● NTT 의 회사법 (1985년 4월)

부칙제2조 (회사양태의 검토)

정부는,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5년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 및 이 법률 시행후의 제반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양태에 관한 검토를 가하여,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한다.

<자료2> ● NTT 회사법 부칙 제2조에 바탕하여 강구할 조치
(1990년 3월)

정부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바탕하여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양태에 관하여 검토를 가한 결과, 전기통신심의회의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에 바탕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방안 등의 양태」 담신의 정신을 살려, 아래의 방침에 따라서 소요의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한다.

NTT의 양태에 관하여 1995년도에 검토를 실시하여 결론을 얻는다.

<자료3>
● 정부각료회의 결정 (1996년 3월)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개정에 관하여

◆ 정보, 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구체적 항목·생략

◆ NTT 의 경영형태에 관하여

조급히 조치하여야 할 중요과제이나, 금년도내에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 전기통신심의회 담신의 취지에 따라서 규제완화와 접속관계의 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차기 통상국회를 향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검토를 추진한다.

<자료4> NTT 분리·분할에 대한 추진, 반대의 논점

	분리·분할추진 주장	분리·분할반대의 주장	보 족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거리요금의 저렴화가 기대된다 · 지역요금의 저렴화가 기대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의 지역간 격차가 생긴다 · 지역간 경쟁은 간접경쟁 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서비스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유니버설서비스 · 고도정보통신사회에 있어서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는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 · 이용자 국민의 편의향상에는 규제완화가 필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진전으로 인한 서비스의 충실 · 회사간의 서비스경쟁이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통일성은 1사체이어야만이 가능 ·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의 정비는 상호경합으로 촉진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은 엔드·루·엔드의 시스템이며, 네트워크는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반정비의 조기구축이 필요 · 1사체이어야만이 계획성, 실행성이 담보된다
국제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경쟁해야만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국제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 스케일메리트가 약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통신사업에 한정」으로서는 글로벌화에 대응못함 · 통신의 국제경쟁력은 메가컴페티션의 시대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로 인해 복수연구 촉진의 기반이 조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소스분산·분할손실로 연구개발력은 약체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를 사회에 활용하는 등, 일본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계속적인 노력해야함
주주의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회사의 주식 교부 때 「보아보기과세」가 상정되나, 세부담의 비과세조치로 대처가능 · 신회사의 상장에 대해서는 십사기준의 특례 등의 조치강구가 필요하다 · 세금코스트에 관해서는 특례조치로서 대처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의 현물교부는 유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주식이 된다 · 주식 처분가격에 따라서는 배부금액이 절로 줄어든다. 주식의 계속모양에 응하지 모한다. · 적자회사이면 성장할수 없다 · 세금코스트가 약1조 8000억 엔 필요하게되어, 회사수익에 영향을 끼쳐서 배당을 할수 업세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형태의 양태는, 주주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 · 경영적 측면만의 권리확보로서는, 주주의 권리를 지킨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 분리·분할을 NTT에 의무지우는 것은 주주의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일이며, 헌법 제29조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분할 로스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의 활성화 효율화 등으로 상당부분이 해소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대한 분할코스트가 발생 예측 수천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는 요금인상이 되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한국통신노조와 개인휴대통신(PCS)

1. PCS 사업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성격

- 우리조합은 지난 3월 6일 정보통신부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 투쟁은 이번 PCS 사업자에서 한국통신이 배제된 사실에서 축발되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조합이 '94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통신사업의 재벌집중방지, 부당한 미국의 통신시장개방 반대, 또 통신분할 반대 투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우리조합은 통신의 공적 기능인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구현할 수 있도록 통신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 또 한국통신을 국가 주도적 사업자로 육성하여 다가오는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신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 그런데도 정부와 공사측은 통신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공기업인 한국통신을 약화시키려는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이번 PCS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이와 같은 정부와 공사측의 음모가 여지 없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즉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통신을 배제한 것은 통신사업의 재벌집중, 미국의 공기업 약화전략, 한국통신 분할 음모와 맞물려 있고 그것은 결국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 한국통신의 약화는 곧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이다. 또 한 이제껏 저임금으로 시달려온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경쟁을 강요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모순 속에 우리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있다.

2. PCS 사업자 선정에서 드러난 3가지 문제점

<재벌특혜 통신정책>

- PCS 사업권이 초기 1개 사업자(한국통신)에서 5개 사업자로 변경된 것은 명백한 재벌편향 통신정책이다.

- '95년 중반, PCS 개념이 변경되면서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이 주파수만 할당되면 자동적으로 PCS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전자신문 '95. 8. 11자 참조)

- 즉, 초기 PCS의 정의는 “저속 보행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는 셀룰러 서비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개념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셀룰러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KMT)와 신세기통신이 자동적으로 PCS에 참여하게 된다.

- 신규 3개의 사업자 중에서 소위 ‘빅 4’와 30대 재벌들은 활발한 기업 연합을 통하여 2개의 사업권을 배정받을 것이므로 PCS사업은 실질적으로 4개의 사업권이 재벌에게 귀착된다.

- 특히 통신장비업체(빅 4, 현대 삼성 대우 엘지)가 통신사업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통신산업 자체의 재벌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 더욱기 언론 재벌들까지 PCS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PCS사업을 재벌에게 협용하겠다는 근거로 “재벌만이 막대한 자금을 댈 수 있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무서운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통신사업의 재벌편중은 통신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신의 공적기능의 포기를 의미한다.

<표 1>

	3가지 측면	근 거	배 경	예측되는 결과	모순 구도	총체적인 모순구도
P C S 사 업 권	재벌 특혜	“재벌의 효율”	- 재벌에게 4개의 사업권 배정 - PCS 개념변경, - CDMA 채택	- 재벌의 통신산업 지배 - 부의 집중 - 보편적 서비스포기	민중 /재벌	통신의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 적 가치
	미국 요구	“공정경쟁 ” “공기업 약화”	- 공정경쟁 - 회계분리 - 원가계산	- 미국의 통신시장 진입 - 대외종속 - 한국통신 약화	민족 /외세	
	통신 분할	“한국통신의 비효율”	- 한국통신비효율 - 본체는 경쟁력이 없다. - 인력수급 문제	- 한국통신 분할 - 본체는 유선사업과 망의 유지보수만 담당 - 기존망의 효율성상실 - 분할에 따른 고용불안	매판 자본, 정권 /통신 노동 자	유기

< 통신개방에서 미국의 요구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을 약화시키라는 것이다. >

- 한국통신이 자회사 형식으로 PCS를 참여한다는 것은 ‘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업자가 기간망(한국통신의 PSTN)을 자기의 것처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과청의 성명서 '96.3.19)
- 이것은 한미 통신협상에서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한국통신을 약화시키려는데 있다.
- 그 이유는 한국통신이 본체를 통하여 PCS를 추진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 공정경쟁이란 미명으로 저렴하고 용이하게 한국의 기간망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 통신협상에서 소위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National treatment)가 바로 이것이며 미국은 통신개방시 국내 재벌기업과 동일한 대우(조건)로 한국통신 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것이다.
-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되었고 110년동안 한국통신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유지보수된 기간망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PCS 망구축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결국

미국기업의 초과이윤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부가 부당하게 외세에 이전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통신정책의 외세 의존은 지난해 PCS기술방식에서 CDMA 단일표준을 정하면서 이미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이 논의는 국익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CS 기술표준은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당연히 TDMA 복수표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PCS 자회사는 망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한국통신을 분할 시키겠다는 것이다.>

-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권을 주겠다는 형식적인 논거는 한국통신의 비효율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이 정보통신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본질을 정확히 본다면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연초 정보통신부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97년 이후 한국통신을 그룹형태로 경영하며 PCS를 비롯하여 데이터, 위성통신 등을 자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것이었다. ('96년 정보통신부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103쪽)

- 결국 정통부의 궁극적인 의지는 한국통신의 분할이며 한국통신의 분할은 결국 재벌기업과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될 뿐이다.

- 그것은 기존 망의 효율성(network efficiency)을 무시하고 망의 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한 것으로 그 자체가 매우 무모한 발상이다.

- 아울러 유선통신만 관리하게될 때 한국통신은 곧이어 114, 유지보수 등 그동안 우려했던 통신분할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한국통신 자회사, 그들은 무어라 말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여기서는 자회사 방안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와 그 문제점을 간단히 표로(표 3참조) 제시한다. 자회사 방안을 주장하는 이들을 우리는 식민 사관에 물든 매사노(賣社奴)로 감히 단정하면서 한달만에 궤변을 창출

하는 저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에는 실로 인간적이 비애감을 느끼는 것이다.

<표 2>

자회사로 해야한다는 주장	문제점	비고
1. PCS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즉 예상보다 시장성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면 왜 재벌들이 기업의 사활을 걸고 PCS를 하겠다는 것인지. - PCS사업권은 주파수를 배당받는 것이며 배당된 주파수 자체가 자산이 된다. - 한국통신은 PCS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므로 초기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2. 한국통신 본체는 비효율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체가 비효율이기 때문에 자회사로 해야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이다. 모회사가 비효율인데 자회사는 효율이라는 논리가 타당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체가 비효율이라면 KT존재근거가 없음.
3. 기지국, 영업망 설치가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것은 부분적인 이유이며 본체사업권을 포기할 근거는 아니다. - 우리보다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 '망이 있고, 전국500여 곳의 영업점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못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 아니냐 	
4. KT 미래는 그룹경영에 있다.	- 그룹경영은 통신사업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5. 본체로서는 고급 인력 유치가 안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면 본체 노동자들은 무엇인가. - 노동조합은 정녕 그것이 문제라면 경영효율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 (유덕상위원장 제1차 단체교섭시. '96.3.19) 	
6. 외국의 추세가 PCS는 자회사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스웨덴의 경우에는 본체가 무선사업체를 흡수한 형태(내부화)로 자회사로 경영한다. - 우리처럼 우리사업 영역을 자회사로 떼어냈던 것(외부화)은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NTT 도코모 등

3. 향후 투쟁의 전망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 지난 4월 15일 한국통신 이준사장은 5만 조합원과 30만 통신가족의 여망을 저버리고 자회사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계획서(RFP)를 제출했다.
- 한국통신 간부들은 물론 연구개발본부의 석박사들도 조목조목 반대했던 자회사방안을 마침내 확정한 것이다.
- 이 짜움에서 이준 사장을 중심으로한 공사 경영진들은 신뢰를 상실했고 그것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통신 사장은 정보통신부의 '위탁경영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온갖 궤변과 변설로 한국통신 가족들을 기만한 몇몇 경영진들의 과오는 두고두고 한국통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우리조합은 그동안 정통부 농성, 경영진과 논쟁, 다양한 홍보투쟁,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하여 PCS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홍보했다.
- 한편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반응도 다양하다는 정보이다. 과연 자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고 모회사는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가 아직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심지어 이번 사업자 선정방식 자체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즉 초기 5개 사업자가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하나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거기다가 사업자 선정방식이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었겠느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 4월 19일 자) 또 국민적인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또 지난 4월 17일은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PCS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이제 PCS문제는 범국민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범대위를 통한 대응>

-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제기하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함
- 단순히 PCS 문제를 떠나서 이나라 통신정책, 통신개방 문제를 전면적인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하고 범대위와 결합하여 더욱 강고한 투쟁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사업자 선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시 제기하여 정통부의 재벌편향 통신정책과 망의 효율을 무시한 한국통신 자회사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우리의 평화적인 방법들이 좌절되었을 때는 조합으로서 매우 '비장한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마무리

- 결국 우리의 요구는 한마디로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이 (무선)통신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통신노동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 한국통신 본체가 PCS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통신의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노조 출범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통신사업의 반재벌화 반외세, 반분할'이라는 기조와 일치하며, 망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통신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통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통신의 공적 기능인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통신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 바로 이것이 단순히 편협한 자사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우리 투쟁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점이다.
- 우리는 한국통신이 바로서는 것이 이나라 통신이 바로 서는 길이며, 그것은 통신으로 보국(輔國), 안민(安民)하는 우리 통신 노동자의 길이라고 믿는다.

토론요지 2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본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이승원 (데이콤노조 위원장)

1. 금번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본 정책에 문제점은 PCS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에서 재검토해야 함

1)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 전신 전화에 해당 (ITU-T, R)
유선계 사업 보호 정책

2) 공공성 확보 방안 : 소유경영 분리,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공공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

ex) 데이콤의 사례 : 정부지분이 전혀 없지만 정관변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

AT&T : 기관투자가(34.1%, 766명), 내부소유자(0.04%, 27명),
소액주주(65.86%, 2,417,654명), 최대주주 : Wells Fargo(2.60%)

KDD : 법인(31.02%, 우정성공제조합 10.98%, NTT 9.99%, NTT 공제 조합 2.07% 기타 7.98%), 금융기관(52.17%), 기타 소액주주(16.81%)
최대주주 10.98%

2. 해외의 규제 정책

- 1) 미국 : 서비스 (기본/고도 통신) 규제, 시설 보유 유무구분 없음
- 2) 일본 : 서비스 (기본/고도 통신) 규제없음, 시설 보유 유무구분
- 3) 한국 : 서비스 (기본/고도 통신) 규제, 시설 보유 유무구분

3. 통신사업 구조의 변화

구 분		경쟁 도입 내용
일반 통신 사업	시내	통신공사 독점
	국제	통신공사와 데이터통신(주)의 복점
	장거리	필요시 통신공사이외에 1개 사업자 지정
특정통신사업	무선전화사업은 전국 복점 무선후출사업은 지역별 복점	
부가통신사업	전면 자유경쟁	

구 분		경쟁 도입 내용
일반 통신 사업	시내	한국통신 독점
	국제	한국통신과 데이콤(주)외 1개 사업자 선정
	장거리	한국통신이외에 데이콤 지정
특정통신사업	무선전화사업은 전국 복점 무선후출사업은 지역별 복점	
부가통신사업	전면 자유경쟁	

허가대상서비스	사업 구역	'95 허가 사업자수	기 존 사업자 수
국제전화	전국	1	2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국내유선)	허가신청법인이 희망하는 지역	적격법인	3
P C S	전국	3	-
T R S	전국 지역(무선후출사업구역별 1)	1 9	1 -
C T - 2	전국 지역(무선후출사업구역별 1, 수도권은 2)	1 10	-
무선데이타	전국	3	-
무선후출	지역(수도권 1, 부산·경남권 1)	2	10

4.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본 정책의 주요 문제점

- 수직적 결합 : 장비제조업체의 서비스 사업 진출 전면 허용
- 잠재적 PCS 사업자 양산 : CT-2, TRS, PCS 사업자 30여개 신규 허용
- 컨소시엄 구성의 지분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 결여로 결국 특정자본의
지배를 허용함

PCS 사업자 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1. 통신시장개방과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의 진행 경과

1)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

-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주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시장개방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NGBT)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96년 4월말을 시한으로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95년 7월 이에 대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양허안의 주요내용은 98년 유무선 전화서비스 사업의 외국인 지분참여 33% 허용, 위성통신서비스 완전개방, 국가기술 표준에 의한 외국업체 참여제한 해소 등이다(스페인, 포르투칼 등은 주요부문에 대한 개방을 2001년 이후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자국내 법률인 슈퍼301조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89.2.23) 등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기본통신협상에 대한 한미간 쌍무협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굴욕적인 한미간 협상이 총10여 차례(쌍무협상 5차례, 통신협상 5차례) 이상 진행되었다. 특히 그동안 철저히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2차례 걸쳐 단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92년 한미 통신협상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방확대와 국내시장진입 규제완화를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특히 92년 6월 통신협상부터는 이동통신, 위성통신의 개방을 비롯하여 마침내 기본통신서비스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뿐만 아니라 93년, 94년, 95년 협상과정에서 한국통신의 각종 기기조달에 관한 제도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강압적으로 개방지연에 따른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국내규정(품질인증절차)까지 무시해가며 미국AT&T사의 교환기를 구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96년 3월 24일부터 4월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통신회담에서는 국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폐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신규통신 사업자선정시 8조원이 넘는 통신장비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술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외면한 PCS 기술방식의 단일표준화(CDMA)

- 95년 10월 PCS 통신기술방식을 'CDMA'로 단일표준화 하는 과정도 세계적인 기술발전상황과 기술자립, WTO시대 국제경쟁환경과 경쟁력 확보 등과 꾀리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기술선점을 통한 국내시장보호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CDMA가 국내 단일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CDMA가 이론적으로 진보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아직 개발단계에 있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국이 도입한 단일 기술표준은 국내 중소기업인 콜컴사의 개별표준에 불과하여 향후 같은 CDMA방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방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 국가의 단일한 기술표준으로 설정한 것은 성급하기 그지 없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한국의 통신기술이 미국의 중소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종속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그에 따른 천문학적 액수의 장비구입비와 로열티 부담액은 결국 소비자인 한국국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 또한 현재 국제적인 이동전화와 PCS통신기술의 기술표준이 되고 있는 TDMA방식도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기술진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차세대 이동통신(FPLMT, UPT)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적 토대로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C가 '국가기술 표준에 의한 외국업체 참여제한 해소'를 요구하고 나온다면 TDMA방식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통신개도국에 불과한 한국에서 어떤 방식이 기술자립에 유리한가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진보 또한 시장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때, 가능하면 기술습득이 쉽고 국제시장여건이 좋은 방식, 비용이 저렴하여 경쟁력이 있는 방식을 애써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복수표준을 두고 있지 않은가.

- 현재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CDMA장비의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해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낡은 아날로그 장비구입 계약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정통부-이동통신-신세기통신간에 벌어진 주파수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상황은 'CDMA'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아날로그 시스템이 필요한 수준인 것이다. 결국 새로운 CDMA가입자들은 상당기간동안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통화를 해야한다. 우선 통신시장부터 넘겨주고보자는 식의 출속행정이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3) 미국과 재벌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는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

- 이러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강압적인 정보통신시장개방 요구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보통신정책이다. 2차(90년, 95년)에 걸친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노골적인 미국과 재벌위주의 통신사업 '나눠주기'정책에 불과했다. 98년 전면개방을 2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쟁력 있는 통신산업 육성 방안'이란 국내통신시장보호를 통한 내실 있는 '기술개발' 위주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보다는 '독점재벌들의 시장나눠갖기' 경쟁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다름아니었다.

- 제1차 구조조정

정부는 1989년 2월 23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1990년 제1차 통신사업구조조정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된 제1차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통신사업에 있어서 시장개방체제와 '재벌의 통신사업 장악'(데이콤, 이동통신 민영화 등)라는 커다란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구조조정 이전의 통신사업은 분야별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구조조정 이후에는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독점을 유지시키고, 장거리·국제전화·이동통신분야에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며, 부가통신 사업부문은 조기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의자비율(50%) 철폐가 이루어져 1991년 국제 VAN 서비스(부가가치 서비스)가 전면 허용되었다.

- 제2차 구조조정

이후 93년 12월 타결된 UR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 그리고 미국의 더욱 강화된 개방압력 하에서 정부는 통신개도국 수준의 국내통신시장 상황과는 관계없이 더욱 더 전격적인 시장개방체제 위주의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재벌에게 '통신사업 나눠주기' 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1995년 1월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단행된 제2차 통신사업 구조조정이다. 제2차 통신사업구조정의 핵심은 시외전화 부문 등 '경쟁'의 가속화, 재벌과 미국의 통신사업 진입을 가로막았던 각종 제도 철폐, 경쟁력강화와 '공기업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등이다. 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분류 --> 기존에 유무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던 기간통신 사업영역을 통합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 지분소유 한도 --> 통신설비업체(현대, 삼성, 대우, LG)들의 지분제한을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등 기간통신(유선전화)의 경우 3%에서 10%까지, 이동전화, 무선플러스 출 등 기타기간통신(특정)통신사업의 경우 10%에서 1/3까지 참여(외국인 포함) 등으로 크게 완화하였다. 이로써 재벌의 통신서비스와 장비부문의 동시장악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4) 재벌의 통신시장 장악 현황

- 현재 한국통신시장은 한국통신이 시내전화를 독점하고 있고, 시외·국제전화는 한국통신과 데이콤간, 이동통신은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이 각각 분점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은 완전 경쟁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은 모두 재벌과 미국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동안 데이콤 제2이동통신 등에 대한 재벌들의 '추악한 전쟁'은 결국 재벌들간의 담합에 따른 '나눠먹기'로 결말이 났으며, 최근 한국통신 민영화와 PCS등 신규통신 사업자선정과정도 재벌간 치열한 경쟁, 담합, 합종연횡을 거쳐 결국 '미국자본과 재벌들의 통신사업권 나눠먹기' 잔치판이 되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업종전문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및 소유집중 제한 등 정부가 경쟁력강화 및 경제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

- 이미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94년)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전경련에 사업자 선정권을 넘겨주었고, 결국 포철(15%), 코오롱(14%), 그리고 삼성, 현대, 대우, LG 등 4개 재벌이 각각 3%씩 나누어 갖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편법으로 23%나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선경에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조항과 여신관리 규정 적용을 2년 또는 5년간 유예받는 등 특혜를 받지 못했다면 선경그룹의 이동통신 인수는 불가능했다. 데이콤의 경우에서도 경영권 장악을 위한 LG와 동양그룹간의 총력전 양상을 띤 '재벌들간의 통신전쟁'이 벌어졌다. 럭키 금성은 체신부 전환사채 매각 공개입찰시 납품업체, 위장계열사의 친인척을 동원해 편법적으로 17.29%의 지분(지분제한 10%)을 장악해 최대주주가 되었고, 기존의 최대주주이던 동양그룹의 지분율도 16.36%나 된다. 뿐만 아니라 삼성, 대우, 현대도 상당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신세기통신의 경우, 웰컴사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의 20.98%를 확보하고 있다.

2. 당면 PCS 등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상황과 문제점

1) 신규통신사업권 허가신청 권리사업 현황 - 재벌들의 잔치판

분야·권역 허가업체수	주도업체	컨소시엄명	대표자	구성주주
P C S	(1) 한국통신 장비업체 (1) LG 비제조업체(1) 국제전화 (1)	자회사신설 삼성·현대 LG텔레콤 금호·효성 한솔·데이콤 중기협중인회 8사연합	이 준 에버넷 장기호 오효원 정용문 성기호 한국글로벌 텔레콤 동부 아남 기아 한진	중견·중소기업 포함 남궁석 대한전선 아남산업 태일정밀 등 147사 기아 일진 등 120사 대우통신 조홍은행 태창 등 533사 데이콤 한화 쌍용 고합 등 300여개사 한국정보통신 맥슨전자 등 14,295사 고합 대륭정밀 동아 롯데 아시아시멘트 일진 한라 해태 8사연합, 한전 등 500여사 삼성전자 롯데 한화 등 84사 현대전자 한국이동통신 쌍용그룹 등 54사 LG 전자 대륭정밀 서울이동통신 등 78사 고충삼 풍산 진도 크라운제과 등 55사
	전국(1)	한국전자 선진 두원정공 임광토건 태일정밀	이유직 이인혁 허 완 가재남 장규현	한국전자 등 36개사 선진 등 48개사 두원정공 등 46개사 임광토건 등 37개사 태일정밀 등 42사
	T R S	세방 동방 경남에너지 동아타이어 화성산업 대구도시가스 코리아데이타 보성통신건설 보성건설 광주전남 라인건설 총북, 전북, 강원	글로벌텔레콤 동방텔레콤 부경텔레콤 부산텔레콤 대구정보통신 대구TRS 영남텔레콤 대전공用통신 광주텔레콤 무등TRS	황성근 장세강 강병철 김만수 최상녕 기옥연 고 정 김종원 박영순 신세봉 *신청자 없음
	제주	우진동합금설	제주TRS	좌운식
	전국(1)	한국통신	본부내 조직	이 준
	수도권 (2)	삼보컴퓨터 단암산업 이수화학	나레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이수통신	김종길 이봉훈 김상범
	부산경남 C T 2	부일이동통신 세립이동통신 충남이동통신 광주이동통신 새한이동통신 전북이동통신 강원이동통신 제주이동통신	최무용 김문규 심종의 심판구 이희달 최규현 정선교 김희상	나산설업 설지건설 백광소재 등 14사 두일산업 자네트시스템 평창건설 등 10사 대명전자 새한정기 화승전자 등 35사
	무선테이타 (3)	진로 한보 고려아연 대한펄프 인테크사업 한국컴퓨터	지오텔레콤 무선데이타통신 에어미디어 대한무선통신 인테크무선통신 한컴텔레콤	길천문 정한근 장철준 최병준 홍용남 한홍섭
수도권 무선 호출 (1)	성미전자 오리엔트시계 전방 대웅제약 큐닉스컴퓨터 엔케이텔레콤	해피텔레콤 두리이동통신 하나이동통신 보라이동통신 큐닉스텔레콤 휴네텔	송광사 박성원 - 원충윤 김경래 홍정식	성미 경인전자 남성 공성통신 등 43사 대한제당 한미은행 웅진출판사 등 56사 대영전자 화승전자 일진 등 33사 대웅제약 등 31사 메디슨KTB 삼성출판사 등 32사 삼미기업 신광기업 우진전자 등 45사
	회선임대 (무제한)	송유관공사 한전·삼보	강승수 이용래	대한송유관공사 등 34사 삼보컴퓨터·한전 등 100사

2) PCS 등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기준 이전의 문제점

첫째, 통신사업권 획득 이후 기업경영의 도덕성, 소유-경영분리,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지원방안 등 세부사업계획의 이행을 강제할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정기준은 단지 '통신사업권 넘겨주기'를 위한 심사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재벌들의 행태로 보아 우선 사업권획득을 통해 시장만 장악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재벌의 통신사업 장악을 차단할 수 있는 지분제한 등 법적 근거없이 콘소시엄구성만으로 소유-경영의 분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후 재벌들의 경영권 장악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한국통신 자회사, 장비제조업체로 나누어 PCS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4대재벌과 미국업체들의 국내통신시장 독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4대 재벌그룹의 장비제조업체들이 서비스까지 장악하게 되면 기기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자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장비제조업체는 장비제조업체로 점차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더구나 CDMA로 단일기술표준을 정해놓고 PCS사업을 경쟁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장비제조의 핵심기술을 가진 미국업체들과 제휴한 재벌들이 한국통신 자회사를 비롯한 각 콘소시엄을 좌지우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사 중소기업연합시엄이 사업권을 확보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벌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분야별로 진입규제를 명확히 하여 경쟁력 있는 복수의 전문기업군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심사항목구성에 있어서 통신전문기업육성을 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세계적인 거대 통신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지금의 문어발식 재벌경제로는 어렵다. 신규통신에 참여하기 위해 주력업체 선정까지 반납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정책 그자체가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재벌경제의 개혁을 후퇴시키고 재벌경제, 문어발식 경영을 조장해왔던 그동안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전문기업육성방안이 빠진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넷째, 한국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까지는 해외기업들의 국내 통신산업 잠식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특히 97년부터 상장기업 지분소유제한이 철폐되고, OECD가입과정에서 외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허용되면 삼성그룹조차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천문학적인 해외 M&A자금 앞에서 한국의 통신업체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라는 아직까지 통신개도국임을 감안 할 때 2000년 직후까지는 해외자본의 통신사업 진입 및 확보지분에 대한 상한선규제가 불가피하다.

다섯째, 기술개발에 열악한 환경 즉 CDMA 단일표준을 설정해 놓고 기술개발계획

을 제시하라는 것은 한국의 통신산업을 미국기업에 대한 심각한 기술종속으로 유도하는 조치에 다름아니다.

여섯째, 국민의 생활 필수품인 통신서비스에서 향후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벌의 통신독점이 야기시킬 이윤추구를 위한 담합,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산간벽지, 수익성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지금 방식대로 하면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을 내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러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윤을 많이 내는 사업영역에서 적자가 난 부문을 메꾸어 가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심사절차의 객관성문제

우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 청문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자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전문기업육성과 재벌 편향 배제', '보편적 서비스체계 확립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각계(국회 포함)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별도의 종합적인 청문,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중치를 대외비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정경유착에 의해 혹은 입맛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통상위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가중치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공개리에 재검토되어야 한다.

4) 심사항목별(6개항) 문제점

■ 전기통신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10점)

- 서비스제공계획
 - 1) 시장분석의 적정성 2) 서비스 제공원가 및 요금수준의 적정성
 - 3) 서비스 제공 및 영업전략의 우수성 4)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 5) 서비스 제공방식의 적정성
- 서비스제공계획과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연계성
 - 1)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계획과의 일관성 및 부합성
- 향후 발전계획 및 실천방안
 - 1) 당해 사업의 육성 발전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2) 해외진출 의지 및 실천방안
- 전기통신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문제점>

- '이용자보호계획'은 '보편적서비스 제공'계획으로 바뀌어야 하며 전기통신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법률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

- '서비스제공 방식의 적정성'은 상당기간 동안 미완의 기술인 CDMA방식으로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CDMA로 서비스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로 그 공백을 메꾸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심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10점)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계획
 - 1)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 투자관련 기자재의 구매계획 및 조달방법
 - 1) 기자재 구매계획의 적정성 2) 기자재 조달방법 및 실현 가능성
- 비제조업체에 대한 차별방지계획 (장비제조업체에만 적용)
 - 1)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정보제공계획의 적정성 2) 설비제공계획의 적정성
 - 3) 기술제공계획의 적정성 4) 기타 차별방지 계획
-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 (비장비 제조업체에만 적용)
 - 1) 투자관련 구매 및 조달에 관한 협력계획 2) 기타 협력관계 발전계획

<문제점>

- 장비제조업체의 경우는 PCS사업자에서 일단 배제해야 한다. 자립적인 장비개발(부품조립이 아닌) 전문업체로 성장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그 실적(핵심 장비의 국산화율 70%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 PCS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업종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도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직적 결합에 의한 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 필요하다.

- 장비제조업체의 비장비제조업체에 대한 차별방지계획은 매우 허구적일 수밖에 없으며, 설비규모에 관한 한 이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도 결국 자금조달능력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

■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능력(10점)

- 소요자금구조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1) 소요자금구조 추정 2) 대주주 자금조달계획 3) 주요주주 자금조달계획
- 대주주, 주요주주의 재무구조
 - 1) 재무구조의 수익성
 - (· 총자산 경상이익률 ·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 매출액 경상이익률)
 - 2)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비율 · 부채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 3) 재무구조의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자기자본 회전율)
 - 4) 재무구조의 생산성(· 총자본 투자효율 · 부가가치율 · 설비투자효율)

<문제점>

- 대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은 부동산 처분, 전문기업화하는데 불필요한 기업 처분 등의 방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이 항목 역시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

- 주주구성 및 법인설립계획
 - 1)주주구성의 적정성 2)법인설립계획의 우수성 3)통신사업에 참여 타당성
- 대주주 참여업종수, 최근 5년간 기업인수 및 신규업종 진출유무와 그 내용
 - 1) 대주주 참여업종수 및 상호연관성
 - 2) 최근 5년간 기업인수, 신규업종 진출건수 및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의 도덕성 등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적정성
 - 1) 대주주의 기업경영의 도덕성
-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

<문제점>

- 기업경영의 도덕성은 재벌그룹, 소유집중 정도, 족벌경영체제, 문어발식 경영 여부, 각종 투기행적, 부실공사 여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기업의 산업체해율, 환경공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무시한 무노조경영기업, 노조탄압기업, 불법용역 등 전근대적인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실적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가장 열악한 경우는 다른 조건의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 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 해당역무관련 기술개발 및 그 실현 가능성
 - 1) 체택기술의 우수성 2) 기술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 차세대 관련 기술계획 및 그 실현 가능성
 - 1) 차세대 관련 기술계획의 우수성 2) 기술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 기술의 공개 · 이전 등 표준화계획
 - 1) 기술공개 및 이전계획과 그 실현가능성
-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계획
 - 1) 전문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2) 전문기술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 기술개발지원계획 등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 제조업 및 S/W산업육성 · 지원과 관련된 종합계획 및 그 실천방안
 - 1)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목표(연도별 금액 및 대상기업수)와 그 대조건
 - 2) 건전한 구매관행 확립방안
 - 3) 관련기업(창업기업 포함)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천방안
-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종합평가

<문제점>

- 채택 기술의 우수성은 이론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시장성, 기술자립 여부, 대외 경쟁력, 기술진보 가능성, 경제성, 보편적 서비스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20점)

- 시스템 계획
 - 1) 시스템구성의 적정성 2) 시스템기능의 우수성
- 망구성 계획
 - 1)망품질목표 및 망계획의 우수성 2) 타통신망과의 상호접속
- 운용보전계획 및 비상시 대비계획
 - 1) 운용보전목표 및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 2) 장애시 대체과 그장 · 시험 · 관리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
 - 3) 운용보전기술 발전계획의 타당성
- 운용관리인력의 확보 및 양성계획
 - 1) 운용관리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2) 운용관리인력 양성계획의 우수성
-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종합평가

3. 대응 방향

1) 통신시장의 개방일정에 대하여

▲ 정부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통신개방압력에 끌려다니기에 급급한 한미통신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WTO기본통신협상에 대한 굴욕적 쟁무협상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자국내 법률인 슈퍼301조를 빌미로 약소국에 대해 쟁무협상을 강요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된 일방적인 통신개방일정 및 그 내용을 전면 재조정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 및 국회동의를 거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신시장개방일정'을 재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통신주권의 유린, 국내통신산업의 종속, 해당 종사자,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 일방적인 개방이 야기시킬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개방에 따른 이행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기술종속 및 기술표준 단일화에 대하여

▲ WTO체제하에서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기술종속을 가속화시킬 기술표준 단일화 보다는 복수기술표준으로 시정해야 한다. 기술표준 재정립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재벌위주의 통신정책에 대하여

▲ 재벌의 통신시장장악을 차단하여 이를 경제민주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조정된 통신개방일정에 맞춰 95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법을 재개정하여 외국자본과 재벌의 지분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 우선 통신장비업체의 사업자선정을 차단하고 분야별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신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특별법)이 요구된다.

▲ 범국민적인 감시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4) 공공성,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에 대하여

▲ 보편적 서비스는 소유구조에서부터 공공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 이를 위해 새사업자의 지분구조는 주도사업자(1/3), 우리사주, 국민주(1/3) 정부 및 공공지분(1/3) 등의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신개도국 수준을 벗어날 때까지는 M&A에 통신사업이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 또한 각 사업영역에 대해 우선 공기업을 통해 기본적인 '보편적서비스'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사기업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서비스체계를 방지해야 한다.

▲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협의회', '사외이사제', '노동이사' 등의 방

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필수적이며, 주주총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통신사업의 공적 기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5) 당면 PCS등 7개분야 새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하여

▲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심사위원을 재구성해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청문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심사결과 또한 종합적인 청문을 거쳐 국회동의를 얻도록 요구해 나가야 한다.

▲ 사업계획서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경제개혁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

卷一百一十五

上卷

卷一百一十五

